
함께하는 충북
2011년 안전관리계획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안전관리헌장

오늘날 우리는 태풍·지진·화재·교통사고·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Ⅰ.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Ⅰ.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Ⅰ.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Ⅰ.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Ⅰ.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목 차

제1편 총 칙

제1장 안전관리계획 개요 ····· 3

제2장 2010년 안전관리 추진실적 평가 ····· 7

제2편 중점추진과제

1.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사업추진 ····· 17

2. 자연친화적 재해위험지구 정비 ····· 18

3.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 ····· 20

4. 2010년 수해복구사업 조기마무리 ····· 21

5. 하천기본계획 수립 ····· 22

6.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23

7. 하도개선사업 ····· 24

8.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 25

9. 소하천정비사업 ····· 26

제3편 재난관리체계

제1절 재난의 법적성격 및 분류체계 ····· 29

제2절 재난관리체계 ····· 31

제3절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 ····· 32

제4절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34

제5절 충청북도 긴급구조통제단 ····· 46

제4편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대책

[자연재난]

제1장 풍수해대책 ····· 53
제2장 설해대책 ····· 95
제3장 가뭄재난대책 ····· 117
제4장 지진재난대책 ····· 126
제5장 황사대책 ····· 153
제6장 폭염대책 ····· 160

[인적재난]

제7장 철도재난대책 ····· 173
제8장 도로재난대책 ····· 177
제9장 전기·유류·가스 재난대책 ····· 188
제10장 폭발·대형화재대책 ····· 233
제11장 건축물 등 시설물재난대책 ····· 248
제12장 산불방지대책 ····· 254
제13장 유독물·환경오염 방지대책 ····· 259
제14장 다중이용시설 재난대책 ····· 272
제15장 유도선 재난대책 ····· 281
제16장 문화재 재난대책 ····· 302
제17장 상·하수도 재난대책 ····· 314

제5편 국가기반보호 재난관리대책

제1장 국가기반 재난관리 체계 339

제1절 재난관리부서 기구 및 정·현원 현황 339

제2절 국가기반재난 상황관리체제 구축 341

제2장 분야별 재난관리 대책 351

제1절 에너지 분야 351

제2절 정보통신 분야 440

제3절 교통·수송 분야 476

제4절 보건·의료 분야 559

제5절 환경 분야 578

제6절 식·용수 분야 587

제7절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분야 664

제8절 참고자료 698

제6편 재정투자 계획 705

제 1 편
총 칙

제1장 안전관리계획 개요

제1절 계획의 의의

1. 목 적

○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성 격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 등을 종합한 지역안전관리집행계획

3.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4. 수립분야

○ 자연재난·인적재난·국가기반보호·전염병 분야

제2절 재난의 정의

1. 재난의 정의

○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①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가뭄·낙뢰·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종전의 자연재해)

②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종전의 인적재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③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사회적재난)

○ 「해외재난」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제3절 재난관리 책무

1. 국가 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및 시·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등

2. 도민의 책무

○ 도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재난의 신고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제4절 계획수립 절차 및 분야

1. 계획수립 절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5년)

지침작성·시행	⇨	계획수립·제출	⇨	심의·확정시달
국무총리(행안부)→ 관계 중앙부처(청)		관계 중앙부처(청)→ 국무총리(행안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중앙부처(청)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1년)

계획수립·제출	⇨	심의확정·시달	⇨	집행계획·시행
관계중앙부처(청)→ 행안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행안부→중앙부처(청)		중앙부처(청)→ 도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 충청북도 안전관리계획(1년)

지침작성·시행	⇨	계획수립	⇨	심의·확정시행
행안부(소방방재청 의견수렴)→ 도		도 재난관리 책임기관 계획 종합		도안전관리위원회, 도→행안부, 시군 등

○ 시·군 안전관리기본계획(1년)

지침작성·시행	⇨	계획수립	⇨	심의·확정시달
도→ 시·군		시·군 재난관리 책임기관 계획종합		시·군안전관리위원회, 시·군→도

2. 계획수립 분야

○ 유형별

1) 풍수해 대책
2) 설해대책
3) 가뭄재난대책
4) 지진재난대책
5) 황사대책
6) 폭염대책
7) 항공재난대책
8) 철도재난대책
9) 도로재난대책
10) 전기·유류·가스 재난대책
11) 폭발·대형화재대책
12) 건축물 등 시설물재난대책
13) 산불방지대책
14) 유독물·환경오염 방지대책
15) 다중이용시설 재난대책
16) 유도선 재난대책
17) 문화재 재난대책
18) 상·하수도 재난대책
19)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20) 기타 대책

○ 단계별

1) 예방대책 2) 대비대책 3) 대응대책 4) 복구대책

○ 항목별

1) 자재의 비축·수급과 장비 및 시설의 확보 2) 재난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 4) 재난응급복구대책 5) 주민대피계획 6) 재난 예보·경보요령 7)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8) 재난구조 및 응급구호장비·시설의 확보 9) 방역 등 보건위생 및 부상자 치료 10) 전기·통신의 긴급소통계획 및 교통수송대책 11) 군 장비 및 병력의 지원협조 12) 재난복구 13) 재난예방사업계획 및 관리대책

제2장 2010년 안전관리 추진실적 평가

제1절 안전관리계획추진실적

【재난예방·대비 및 대응분야】

○ 체계적인 재난종합상황 관리

-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관리 : 2인1조 상시근무
- 재난상황 정보 실시간 제공 : 인터넷, 전광판 등
- 기상 예비특보부터 단계별 비상근무 : 2단계(사전대비, 비상)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강화

- 예·경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정비 : 3회(상·하반기, 태풍대비)
  ·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49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235개소) 등
- 통신망 파손대비 비상통신체계 구축 : 위성전화기(72대) 등
- 재난감시 CCTV 원격전원제어 장비 설치 : 5대, 20백만원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선진형 방재체제 구축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12개 시·군)
-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재단 운영
- 지역자율방재단 방재의식 시범교육 : 300명

○ 자연재난 취약시설 관리 강화

- 대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 점검·정비
- 인명피해 우려지구 중점지정·관리 : 105지구
- 급경사지 관리 강화 : 1,415개소

○ 유비무환의 재난대응태세 확립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유형별 도상·현장훈련
-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제작·배포 : 500부
- 재난발생시 도민행동요령 제작·배포 : 10천부

○ 재해유발요인 사전해소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 협의대상(15개분야, 91개사업), 협의기간 단축(30일→15일)

【재해복구 및 취약시설 정비 분야】

○ '10년 재해복구(수해, 설해)의 조속 마무리

- 복구대상 : 공공시설 75개소, 사유시설(재난지원금) 2,518세대
- 사 업 비 : 123억원(공공시설 45, 사유시설 78)
- 공공시설 복구사업 우기전 완료(100%)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항구적인 정비로 안정성 확보

- '10년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한 지속적 투자 : 12지구 298억원
- 지구지정 연차적 정비추진 : 41개지구, 1,639억원

○ 재난 취약시설 정비

- 재난관리기금사업 지속 추진 : 18지구 21억원
- 정비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도, 시군, 유관기관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

○ 재난예방 기반조성 및 안전문화 정착

- 안전문화운동 확산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지정 운영
- 유도선·수상레저 관계자 실무교육 및 안전점검 강화

○ 범 도민 안전의식 고취

- 사이버 안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생활불편 신고 등
-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
  · 구축단체 : 11개 기관·단체(재난민간단체 8, 협력기관단체 3)
  · 주요기능 : 재난구호, 안전점검, 안전문화운동, 정보교환 등

○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59개소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 46개소, 38백만원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시기별 예방대책 분야】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등급조정 : 3,878개소

- 시설물 693, 건축물 3,185

○ 해빙기, 행락철 등 시기별 안전대책 추진

【하천정비 분야】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 5개소 40km 15억원 투입

○ 수해상습 개선 사업 : 12개소, 20.5km, 321억원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12지구, 298억원

○ 하도준설 및 정비 : 13개소, 18km, 154억원

【주민보호를 위한 도로구조개선 분야】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25개소 17억원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34개소 58억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16개소 113억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4개소 121억원

○ 충청북도 도로대장전산화 용역 : 331㎞ 19억원

【지방도 효율적 유지보수·관리 분야】

○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 46개소, 31억원

- 교량 유지보수 및 정밀점검, 포장도 보수, 배수개선사업

○ 교통관리 개선사업 : 11개소, 124억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교통안전시설 보강 : 18건, 20억원

- 교통안전시설 정비, 긴급 도로보수, 표지판 정비 등

제2절 2010년 안전관리계획의 평가

○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관리, 한발앞선 재난예방 역량강화, 녹색 방재인프라 확충으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였음

○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전 대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구, 급경사지 관리 강화 등 풍수해에 대한 재난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규모 공사는 우기전까지 완공토록 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수충부 호안을 우선 시공하는 등 수방대책을 강구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음

○ 또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수행상습지 개선 사업, 하도개선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수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음

○ 계절별, 시기별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캠페인,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배포하여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하였음.

○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의 강도가 높아지고, 구제역 및 AI 등 국가전염병의 피해가 증대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

제3절 재난관리의 여건과 전망

1.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 기후변화는 인류는 물론 지구상의 다른 생물종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21세기 최대의 환경 문제로 부상

- 산업발전과 에너지소비의 증대로 인한 탄소 배출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킴

▒ 지난 100년간 전세계 평균 기온이 0.74도 상승, 한반도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세계평균을 상회 약 1.5도 상승(6대도시 평균), 금세기말 지구 평균 기온은 최대 6.4도, 해수면은 59cm 상승 전망

○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폭설, 게릴라성 호우, 이상파랑 등 자연재난이 계획기간 내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지속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

- 지속적 예방활동으로 풍수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피해액은 계획기간 중 증가할 것임

○ 기후변화로 인하여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여 전염병 증가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것임

- 기온 상승으로 기존 전염병의 확산이 빨라지며, 신종 전염병 발병의 위험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2. 사회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재난

○ 저출산 및 의료 기술의 발달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수요의 증가가 예상됨

-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삶의 질 및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 도시인구집중, 교통난, 초고층지하연계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증가 등 도시화로 인한 재난안전환경 악화로 단일 사고나 사건을 복잡한 재난으로 발전시킬 개연성이 높음

○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철도,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대형화되고 고속화되면서 생활안전관련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대될 것임

3. 재난·안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재난 및 사고의 규모 및 발생 빈도의 증가로 중앙정부 주도의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가 한계에 도달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지자체 간의 협력, 민·관 및 민·민 협력 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

○ 재난 및 안전관리가 복구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

- 재난 발생 후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예방시스템의 필요성 증대

제4절 추진방향

1. 재난상황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 재난대비 종합상황실 및 조기경보 구축 운영
○ 재난 예·경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
○ 안전문화 운동 확산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

2. 기후변화 대응 재난예방 역량 강화

○ 사전예방 중심의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자연재난 취약시설 관리 강화
○ 재해지원 방재시스템 선진화
○ 2010 수해복구 추진

3.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

○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
○ 청풍명월 700리 물길살리기
○ 댐주변지원 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

제 2 편
중 점 추 진 과 제

1.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사업추진

○ 안전관리가 취약한 물놀이 지역에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

□ 개 요

○ 기　　간 : 2011. 1~5월

○ 사 업 비 : 328백만원

- 위험표지판 설치 : 287백만원 (도비 86, 시군비 201백만원)
- 안전시설 설치　: 41백만원 (국비 21, 도비 6, 시군비 14)

○ 사 업 량 : 123지구

○ 사업주체 : 10개 시·군 (청주, 증평 제외)

○ 사업내용 : 물놀이 지역에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추진계획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침 시달 및 사업비 교부 : 2011. 2월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추진　　: 2011. 2~5월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완료　　: 2011. 5월

□ 기대효과

○ 지역을 찾는 피서객에게 물놀이 안전의식 제고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2. 자연친화적 재해위험지구 정비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정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8조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8년 ~ 2015년(사업별 2~ 3년)
○ 대　　상 : 133지구(침수102, 붕괴 18, 유실 8, 고립 5)
○ 사 업 비 : 4,360억원(국비 2,641, 지방비 1,719)
○ 재 원 별 :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
- '09년까지 :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
○ 주관부처 : 소방방재청(시행자 : 시장·군수)

○ 연도별 완료지구 및 추진계획

구 분	계	기 투 자('98~'10)						'11	'12~'15
		소계	'98~'06	'07	'08	'09	'10		
완료지구(누계)	133	92	64	69	72	84	92	100	133
%	100	69	59	52	54	63	69	75	100
사업비(억원)	4,360	2,721	1,605	151	268	359	338	343	1,296

< 재해위험지구의 유형별 분류 >

○ 침수위험지구 :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외수) 또는 저지대(내수) 등의 침수지구
○ 유실위험지구 : 호우 등에 의한 범람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
○ 고립위험지구 : 집중호우나 대설시 피난 로(路) 등의 유실로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및 축대·언덕 등이 붕괴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도로·인가주변 낙석으로 인명피해나 도로불통 등 피해 우려지역

1-1. 2011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총 지구수 : 133지구(1차 108지구, 2차 추가 25지구)

- 사업비 : 4,360억원(1차 3,189억원, 2차 추가 1,171억원)

○ 2010년까지 : 92지구, 2,681억원 투자(69%)

※ 소하천 정비사업 별도 추진 : 1지구, 40억원 (충주 둔대지구)

○ 2011년 추진 : **21지구 343억원**(국비 206, 도비 41, 시군비 96)

○ 2012년 이후 : 33지구 1,296억원(국비 778, 도비 155, 시군비 363)

○ 2011년 사업추진 지구별 현황

(단위:백만원)

시군	읍면동	지구명	총사업비	'10까지	2011년 계획				'11이후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12개시군		**21지구**	**113,773**	**16,736**	**34,360**	**20,616**	**4,124**	**9,620**	**62,677**	
청주	현암	현암	4,273	2,500	1,773	1,064	213	496	-	계속(완료)
청주	신전	신전	3,259	-	1,600	960	192	448	1,659	신규(계속)
청주	휴암	휴암	4,717	-	2,000	1,200	240	560	2,717	신규(계속)
충주	엄정	미내	7,000	-	1,500	900	180	420	5,500	신규(계속)
제천	봉양	장평	9,500	6,913	2,587	1,552	310	725	-	계속(완료)
제천	수산	내리들	6,862		500	300	60	140	6,362	신규(계속)
제천	송학	입석	9,722		2,300	1,380	276	644	7,422	신규(계속)
청원	남이	석실	6,400	3,000	3,400	2,040	408	952	-	계속(완료)
청원	미원	기암	3,000		500	300	60	140	2,500	신규(계속)
보은	내북	창리	7,520	3,765	3,755	2,253	451	1,051	-	계속(완료)
옥천	군서	월전	8,000		1,000	600	120	280	7,000	신규(계속)
영동	양산	호탄	2,600		2,600	1,560	312	728	-	신규(완료)
증평	도안	도당	6,500		500	300	60	140	6,000	신규(계속)
증평	도안	화성	10,500		800	480	96	224	9,700	신규(계속)
진천	덕산	화상	1,800	558	1,242	745	149	348	-	계속(완료)
진천	진천	하목	1,500		1,500	900	180	420	-	신규(완료)
진천	백곡	사정	1,000		1,000	600	120	280	-	신규(완료)
괴산	장연	추점	4,500		500	300	60	140	4,000	신규(계속)
괴산	청안	장암	5,000		500	300	60	140	4,500	신규(계속)
음성	감곡	월정	4,500		1,500	900	180	420	3,000	신규(계속)
단양	영춘	느티	5,620		3,303	1,982	396	925	2,317	신규(계속)

3.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

○ 우리 도(道) 재난관리기금을 시·군에 지원하여, 재난취약 및 위험 시설물 등의 사전 정비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대 상 : 재해예방·경감시설, 수문제어시스템, 예·경보시설 등

□ 사업개요

○ 대　　상 : 12 시·군 / 17지구

○ 기　　간 : '11. 1월 ~ '11. 12월

○ 사 업 비 : 2,100백만원 (도 기금 1,050, 시·군 기금 1,050)

□ 추진방침

○ 주택, 농경지 등 수혜도가 큰 재해취약시설 우선 지원

○ 사업비는 도 기금 50% 시·군 기금 50%부담

○ 소규모 사업 우기 전 완공하여 재해예방

□ 추진현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10. 11월초

○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제출 : '10. 12월

○ 기금운용계획 의회 확정 : '10. 12월

□ 향후계획

○ 기금사업비 道 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11. 1월

○ 사업추진실태 정기점검 : 2회(5월, 9월)
- 공사장 안전관리 및 우기대비 조치사항 등 점검

○ 사업완료 : '11. 12월

4. 2010년 수해복구사업 조기마무리

○ 2010년 여름철 호우·태풍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수해 재 피해방지

□ 피해 및 복구계획

(단위:개소/백만원)

재원 / 일자별	피해시설		피해액	복구액			피해지역
	사유시설	공공시설		계	사유시설	공공시설	
계	627	**75**	1,844	4,713	197	**4,516**	
8.13~8.18 호우	61	**1**	124	122	33	**89**	5개시군(청주,충주,청원,괴산,음성)
태풍곤파스	230	**0**	97	44	44	**0**	3개시군(청원,증평,음성)
9. 9~9.12 호우	327	**42**	1,095	3,390	99	**3,291**	7개시군(충주,제천,청원,진천,괴산,음성)
9.21~9.22 호우	9	**32**	528	1,157	21	**1,136**	2개시군(제천,음성)

□ 시설별 피해내역

- 공공시설 : 75개소(도로 9, 하천 34, 산림 3, 수리시설 7, 소규모시설 22)
- 사유시설 : 627개소 [농경지 5.06ha, 농작물 128.8ha, 주택(전·반파,침수) 14동]

□ 향후계획

○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추진으로 '11년 5월 우기전까지 완료

- 개선복구 및 대규모사업은 수충부 및 구조물 등 우선시공으로 수해 재 피해 방지 추진
- 수해복구공사 지도반 편성·운영 : 완료시까지(월1회 현장 확인·점검)

○ 신속한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으로 조기복구 추진

- 성립전 예산집행, 예비비 활용, 긴급입찰, 적격심사기간 단축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 행정절차 병행 추진

5. 하천기본계획 수립

○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홍수량, 홍수위, 하천폭 등 설계의 기준임
○ 하천유역 전체의 체계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6년~2016년
○ 대　　상 : 지방하천
○ 사 업 비 : 45,691백만원
○ 사 업 량 : 166개소 1,845㎞

□ '11년 추진계획

하천명	위치		사업량 (㎞)	사업비 (천원)	비고
	시군	읍면			
총　계	4개 하천		30.0	1,200,000	
송강천	충주	산척	5.0	200,000	
구룡천	청원 괴산	미원 청천	12.5	500,000	
거현천	보은	수한	7.5	300,000	
대전천	괴산	청천	5.0	200,000	

※ 산출근거 : 40,000천원/km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년까지	'11년	'12~'16
추진목표		70.7%	72.3%	100%
사업량	166개소/ 1,845㎞	136개소/ 1,304㎞	4개소/ 30㎞	26개소/ 511㎞
사업비	45,691	18,420	1,200	26,071

※재원 : 도비 100%

6.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하천개수를 통한 재해 예방으로 도민생명과 재산보호
○ 환경친화적 하천정비로 주민의 편익도모 및 삶의 질 향상
※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사업개요

○ 대　　상 : 지방하천
○ 사 업 량 : 137지구 820.2㎞, 12,439억원
- 기 추 진('99~'10) : 57지구, 205.3km, 2,722억원
- 금　　회('11~'11) : 14지구, 20.7km, 365억원
- 향후계획('12~'18) : 68지구, 594.4km, 9,352억원

□ '11년 추진계획

○ '10까지 실적 : 55지구 205.3㎞(25.0%)
○ '11년도 계획 : 14지구 95.8㎞중 '11년 20.7㎞ 완료

〈신규 12, 계속 2〉

구 분	총사업량	'10까지실적	'11년계획	향후계획
계	14지구 95.8km	0.2km	20.7km	74.9km
'10 계속지구	2지구 7.3km	0.2km	6.4km	0.7km
'11 신규지구	12지구 88.5km	-	14.3km	74.2km

※ '11년까지 총 226.0㎞ 완료(25.0%→27.5%)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년까지	**'11년**	향후계획
추진목표		25.0%	**27.5%**	100%
사업량	137지구/ 820.2km	57지구/205.3km (2지구중복)	**14지구/20.7㎞**	68지구/594.2km
사업비	1,243,866	272,167	**36,500**	935,199

※ 재원 : 국비 60%, 도비 40%

7. 하도개선사업

○ 하천 토사퇴적 구간의 자연친화적 하도정비로 하천환경개선
○ 통수능력 제고로 재해 사전예방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사업개요

○ 대　　상 : 지방하천
○ 사업기간 : 2002 ~ 2018년(중·장기사업)
○ 사업규모 : 55지구, 281.6㎞, 172,180백만원
○ 사업내용 : 하도준설,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
○ 사업시행 : 시장, 군수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 추진현황 및 계획

○ 기 추 진('02~10) : 31지구　183.7㎞　78,890백만원
○ '11년도 계획　　: 8지구　18.7㎞　17,049백만원
○ 향후계획('12~18) : 24지구　79.2㎞　76,241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계	'10년까지	'11년	향후계획
추진목표		65.2%	71.8%	100%
사업량(지구/㎞)	55/281.6	31/183.7	8/18.7	24/79.2
사업비(백만원)	172,180	78,890	17,049	76,241

※ 재원 : 국비 60%, 지방비(도비) 40%

8.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 시가지 통과 하천중 생태기능이 미흡한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
○ 지방하천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사업개요

○ 대　　상 : 지방하천
○ 사업기간 : 2009 ~ 2018년(중·장기사업)
○ 사업규모 : 26지구, 115.1㎞, 236,867백만원
○ 사업내용 : 하도준설,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
○ 사업시행 : 시장, 군수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 추진현황 및 계획

○ 기 추 진('09~10) : 3지구 6.1㎞ 29,814백만원
○ '11년도 계획 : 13지구 11.2㎞ 21,577백만원
○ 향후계획('12~18) : 10지구 97.8㎞ 185,476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계	'10년까지	'11년	향후계획
추진목표		5.3%	15.0%	100%
사업량(지구/㎞)	26/115.1	3/6.1	13/11.2	10/97.8
사업비(백만원)	236,867	29,814	21,577	185,476

※ 재원 : 국비 60%, 지방비 40%(도비보조금 차등보조제 적용)

9. 소하천정비사업

□ 사업개요

○ 대　　상 : 소 하 천
○ 사업기간 : 1995 ~ 2016년(22년)
○ 사업규모 : 2,087지구 3,476.9㎞ 14,310억원
○ 시 행 자 : 시장, 군수
○ 주관부처 : 소방방재청

□ '11년 추진계획

○ '11년도 계획 : 25지구, 32.5㎞, 36,454백만원
※ '10년까지 총 1,200지구 1,685.4㎞ 완료

○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결정 : '11. 1
- 설계 및 공사발주 : '11. 2
- 사업완료 예정 : '11. 12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별	계	'10년까지	'11년	향후계획
추진목표		48.4%	49.4%	
사업량	2,087지구/ 3,476.9㎞	1,200지구/ 1,685.4㎞	25지구/ 32.5㎞	862지구/ 1,759㎞
사업비	1,431,000	713,491	36,454	681,055

※ 재원 : 국비 50%, 시군비 50%

제 3 편
재 난 관 리 체 계

제1절 재난의 법적성격 및 분류체계

1. 법적성격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재 난</th></tr>
<tr><td>대 상</td><td colspan="2">·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낙뢰, 지진, 황사, 적조 등</td></tr>
<tr><td>근 거 법</td><td colspan="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td></tr>
<tr><td>수습체제</td><td colspan="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주무부처장관)
- 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방재청장)
↓
· 지역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지역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td></tr>
<tr><td rowspan="2">복구책임</td><td>인적재난</td><td>자연재난</td></tr>
<tr><td>피해 원인자
(보상 및 배상)</td><td>· 방재책임자
-국가시설 : 국가
-지방시설 : 지방자치단체
-개인시설 : 개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국가 일부 보조 및 지원</td></tr>
<tr><td>대규모 재난 발생시</td><td colspan="2">· 재난사태 선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
※ 선포대상지역 3개 시·도 이상 : 선포 → 국무총리
선포대상지역 2개 시·도 이하 : 선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특별재난지역 선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내지 제60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
※ 선포 : 대통령</td></tr>
</table>

3. 대응단계별 운영개념

단계	재난규모	활동개요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 도 차원의 긴급구조대응체계 및 절차 마련 - 연습 및 훈련 실시
대응1단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고	-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발생 상황 - 긴급구조지휘대의 일상적 현장지휘체제 운영 - 소방서 현장지휘대장이 상황실에 보고 - 상황실에서 사고상황 모니터 및 지원기능 수행
대응2단계	중형재난	- 기초자치단체의 일상적 업무수행이 곤란 - 도 차원의 부분적 지원활동이 필요한 상황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 초기 현장 지휘체계 확립 - 현장지휘대는 소방서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소방본부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 가동 - 부분 각동되는 소방본부 통제단의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화에 대해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 - 각 대응구역별 지원기관은 현장지휘소 설치, 즉시 소방서 통제단(통합 현장지휘소)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 파견 - 파견된 연락관은 소속 현장지휘소 설치현황과 출동자원의 현황에 대해 소방서 통제단당에 통보, 통합지휘팀회의에 참가
대응3단계	대형재난	- 충청북도의 일상적 업수수행이 곤란 - 도 차원의 전면적 지원활동 및 중앙통제단의 지원 필요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지휘체계확립 - 소방서 및 본부통제단이 완전 가동 - 중앙통제단이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본부 통제단 각 부장들은 운영상화에 대해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한다. - 도차원의 지원기관은 자체 현장지휘소 설치 - 즉시 본부통제단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 파견 - 연락관은 소속 현장지휘소 설치현황과 출동자원 현황 통제단장에 통보, 통제단 통합지휘팀회의 참가 - 소방서통제단당(소방서장)은 재난대응구역별 통합현장지휘관의 임무수행 - 긴급대응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지원기관은 통제단 운영요원을 배치

※ 이외에 세부계획은 충청북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다.

제 4 편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대책

자 연 재 난

제1장 풍수해대책

제2장 설해대책

제3장 가뭄재난대책

제4장 지진재난대책

제5장 황사대책

제6장 폭염대책

제1장 풍수해 대책

제1절 예방대책

1. 재난관리교육·훈련 및 홍보

가.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

○ 매년 재난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계획 수립 및 우기전 실시

○ 각종 재난종합상황을 가상한 도상 및 현장훈련 실시

○ 상황전파시스템을 대응지시를 활용한 수시 훈련 실시

나. 도민행동요령 홍보대책

○ 재해 유형별, 단계별 행동요령 발간·배부

○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행동요령 수시 게재

○ 매년「방재의 날」행사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라디오, 유선방송, 신문 등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 실시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지정·관리

○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지역을 제외한 관할지역에 소재한 시설·지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낮고 재난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적은 소규모시설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일제조사시기 : 2011년 9~11월(년1회)

○ 조사방법

- 재난관리부서에서 전체시설 조사기본계획 수립
- 시설관리부서에서 소관시설 세부조사계획 수립·실시

○ 조사 결과

- 시설별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하여 지정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A~C급)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 이용인구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지역

·재난위험시설·지역(D,E급) : 긴급히 보수·보강과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 등으로 구분

○ 고시 : 재난위험시설(지역)을 지정·해제 하였을 경우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고시

○ 대상시설 관리 : 정기·수시 안전점검

- 정기점검 : 중점관리대상시설(A~C등급)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실시 및 재난위험시설(D,E등급)에 대한 월 1회 이상 실시
- 수시조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타 법령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수시점검(월별·계절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중복점검을 배제하기 위해 정기점검으로 인정

3.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가. 긴급안전점검

○ 주 관 :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행정기관에 한함)

⇒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

○ 대　　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 시　　기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 계절적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나. 긴급안전조치

○ 조치권자 :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행정기관에 한함)

○ 대　　상

-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관계인
- 안전조치내용

· 정밀안전진단실시,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안전조치결과의 통보

· 통보책임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요내용 : 안전조치결과통보서에 증빙서류·사진 첨부

- 사용제한 또는 금지

· 시　기 :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

· 게　시 :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

4. 안전문화 운동 지원 및 재난관련 민간조직 육성·지원

가. 안전문화 운동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안전문화운동 추진분야

- 산업안전(근로자 위주), 공공안전(시설물 위주)
- 가정안전, 학교안전, 교통안전

○ 추진계획

-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매월 4일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안전문화 봉사자, 일반시민 등과 협조실시
  - 공공기관, 학교, 산업체, 회사, 가정 등에서 자율 실시토록 유도
- **「안전표지 설치하기」 홍보 및 실천**
  - 생활주변에 위험요인이 있거나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
  - 안전표지 설치상태 관리점검 및 대국민 홍보
- **인터넷「안전신고센터」설치·운영** - safety.cb21.net
  - 안전문화운동 홍보 및 안전신고 등
- **가정안전문화운동 추진**
  - 각종 부녀회를 통하여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추진
    ⇒ 부녀회 주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의식 보강표지 부착, 각종 사고시 신고·대피·행동요령
  - 노인, 어린이 안전 등 시기에 맞는 각종 안전요령 등 교육
    ⇒ 가전제품 사용요령, 감전·가스사고예방, 추락·넘어짐 예방 등

나. 재난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 육성·지원

○ 방재지식 보급 및 홍보강화

-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인 주민참여 도모

- 지역 및 기관별 재난예방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신뢰성 있는 방재행정 홍보 및 주민참여 ·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 운영

- 목 적

· 대규모 재난 발생시 정부의 대응 뿐 아니라 민간자율 방재활동을 통해 사전대비 등 완벽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재난 사전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단계의 민간참여 활성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기본방침

· 지역주민의 자발적 지역자율방재단 참여유도

·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NGO) 적극 활용

· 다양한 인적계층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 인적·물적 자원분석을 통한 실천 가능한 방안 도입

- 흐름도



- 기 능

· 민간차원의 재난대비, 대응활동 지원

· 지역재난대비 주요 수방시설 사전점검·정비

· 지역주민 방재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지역 재난 응급복구지원 등

- 주요임무

[상시대비체제시]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지역자율방재단원 상시 관리

· 재난취약지구의 선정·관리 및 대책강구

· 방재단원의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등

· 지역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시]

- 경보의 전달 및 주민대피유도,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
- 이재민 관리, 구호물자의 전달
- 전염병 방재를 위한 방역활동 전개 등 공중보건관리 등

5.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획수립

○ 정비대상 : 자연재해위험지구 총 133개지구('98~2015)
- 정비실적 : 92개지구(69%)
- '10년 추진 : 12지구(완료7, 계속5)
- '11년 이후 : 29지구

○ 정비계획 수립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 정비의 시급성, 인명피해 발생도, 지역여건, 투자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립
- 재해유형별·시군별로 수립
- 연도별 중기 정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 정비사업 추진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
- 대규모 정비사업 지구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집중투자하여 마무리
- 소규모 정비사업 지구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6. 풍수해저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가.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운영

○ 운영중인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점검·정비 실시
(여름철 우기전, 겨울철 재난대책 기간중)

- 대　　상 : 총 13개 지구(산간계곡, 유원지 등)
- 점검내용

· 각종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 경보발령기준의 설정 유무 및 적정성,

· 안내방송 문안의 간결성 등

나.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

○ 전 시·군 우기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점검·정비

- 통보대상자 우기전 일제 점검·정비 및 DB 수정(크로샷시스템)
- 통보대상자 DB 확대 구축(크로샷시스템)
- 마을앰프시설 보강 및 우기전 점검·정비(자동음성통보장치)

○ 여름철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가동(12개 시군)

○ 추진계획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 및 통보대상자 정비 : '11. 1~4월
- 여름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가동 : '11. 5~10월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가동결과 분석 : '11. 11월

다. 재난문자전광판 운영

○ 운영중인 재해문자전광판 점검·정비 실시(우기전)

- 대　　상 : 총 18개 지구(산간계곡, 하천변 유원지 등)
- 점검내용 : 재난문자전광판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 추진계획

- 재난문자전광판 일제 점검·정비 : '11. 4월
- 여름철 재난문자전광판 가동 : '11. 5~10월
- 재난문자전광판 가동결과 분석 : '11. 11월

7. 재해(풍수해 등)근원적인 예방제도 운영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목 적 :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재해유발유인을 사전검토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행정계획 41, 개발사업 50)

-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행정계획 13, 개발사업 15)
-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행정계획 8, 개발사업 9)
- 에너지 개발(개발사업 2)
- 교통시설의 건설(행정계획 5, 개발사업 6)
- 하천의 이용 및 개발(행정계획 2, 개발사업 1)
- 수자원 및 해양개발(행정계획 4, 개발사업 4)
- 산지개발 및 골채채취(행정계획 6, 개발사업 8)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행정계획 3, 개발사업 5)
- 그 밖에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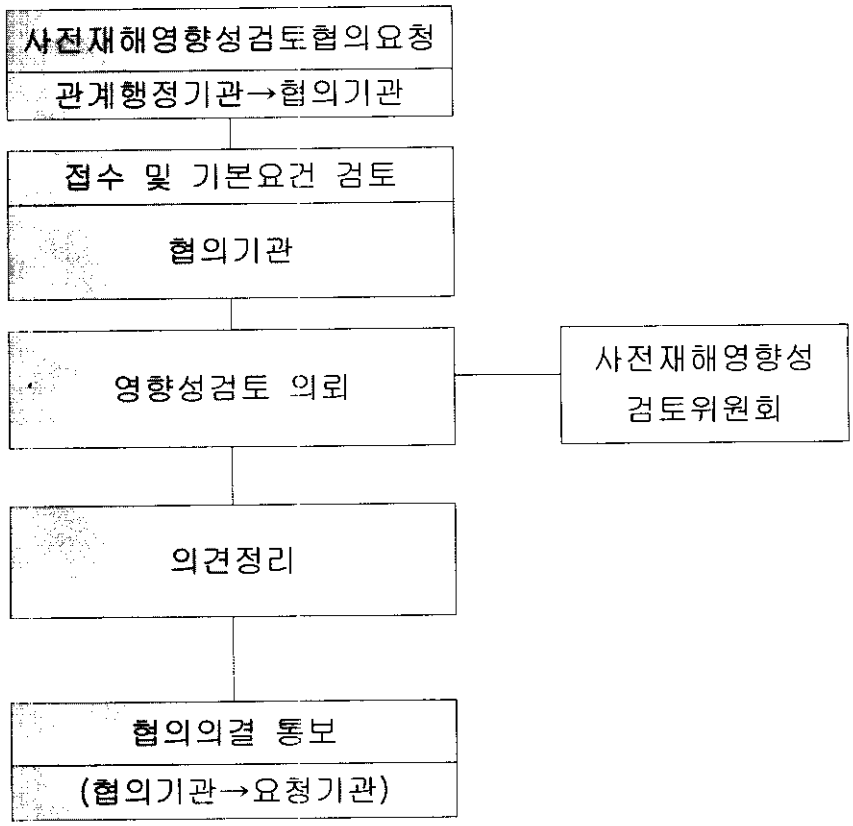
○ 검토협의 절차

- 계획(안) 접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의뢰
- 의견 정리 → 협의요청기관에 의견 통보
- 협의 요청기관에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제출

○ 추진실적(2010년) : 총 59건

· 행정계획 : 35건 · 개발사업 : 24건

< 협의절차 흐름도 >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목 적 : 지역별 재해취약요인 분석 및 각종 정비계획을 체계화 계획수립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내 용

- 시장·군수는 저지대 침수대책,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5년 단위 풍수해저감계획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시·군계획을 기초로 도풍수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에 풍수해저감계획 반영

· 재해예방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도비에서 지원

제2절 대비대책

1. 자재의 비축·수급과 장비 및 시설의 확보

가. 수방자재 확보·비축

○ 비축기준

- 종 류 : 수방자재(포대류, 묶음줄 등), 건설자재(시멘트, 철근, 하수관 및 강재),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등

※ 흡수성 순간마대, 물 매트 등 자재·장비의 현대화 추진

- 비축기준

· 최근 10년간 평균사용량을 감안하되,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피해를 예측한 소요량을 확보

· 긴급용으로 일정량만 보관하고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로 보관창고 공간부족현상 해소

· 재해유형별, 지역·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방재물자 비축

- 비축장소 : 시군·읍면동 창고, 관내 고립예상지역, 수해상습지역 등

○ 점검 및 관리

- 보관자재는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점검하여 불량자재의 폐기처분 및 부족자재는 우기전까지 확보

- 자재의 관리

· 자재의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 부패예방

· 보관창고내에 자재수불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 점검시기

- 1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나.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관리

1) 지정기준

○ 대상장비 : 장비·인력 수송장비 및 연료,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손전등·축전기·소형발전기 등 응급대책을 위한 소형장비, 집게차·청소차·분뇨수거차 등

※ 침수 피해시 쓰레기, 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게차, 청소차, 분뇨차를 필히 지정

○ 지정기준 : 최근 10년간 최대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시설 및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피해유형을 예측한 장비의 종류, 소요예상대수 산정·지정

2) 지정관리

○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하도록 조치

○ 응급복구용 장비의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의서 징구 후 지정 관리

※ 응급복구용 장비에 대해 추진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침수피해시 동원 가능한 청소차, 집게차, 분뇨차 등 쓰레기 처리장비지정 및 확보(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와 응원체계 구축)

○ 시신운구용 차량확보(보건소 및 병원의 엠블런스)

○ 급수운반 차량확보(소방차, 민간보유 급수운반차 등)

○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체계 확립

- 1단계 : 자치단체 보유장비 - 2단계 : 유관기관 보유장비
- 3단계 : 군부대 장비 - 4단계 : 민간장비

○ 지정장비의 지정관리실태 점검 확행

- 재난기간(5~10월) : 매월 파악
- 비재난기간(11~익년4월) : 매분기파악

다. 재해구호물자의 확보·비축

1) 법적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2) 비축기준

○ 대상물자 :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재가구호세트, 개별 구호물품 등으로 구분

○ 비축기준 :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최근 10년간의 재해발생 현황, 물자지원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거나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관방법 : 최근 10년간의 구호실적을 감안하여 교통, 재해상습지역 등을 고려한 구호창고를 설치·운영

※ 도 및 시·군 구호물자 보관창고, 광역구호물품창고, 기타 민간 재해구호관련기관의 재해물품창고 등

3) 확보 및 관리

○ 지역 특성 및 재해 유형에 맞는 재해구호물품 세트 확보

○ 부족물자는 재해구호물품 세트기준 개선지침에 따라 우기전까지 전량 확보

○ 유통기한이 짧거나 화재위험 등 장기보관이 어려운 물품은 개별로 구매처를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

○ 구호창고에는 재해 의연품·재해구호물품 및 재해구호와 관련된 물품만 보관

○ 창고별로 보관책임자를 지정, 보관책임자는 물자의 입·출고 등을 NDMS 상에서 입력 관리

○ 보관책임자는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물자의 망실, 훼손 및 보관상태 등 점검내용을 재해구호물자 점검부에 기재

※ 보관물품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물품의 상태를 점검해야 함.

- 양곡은 현물로 보관하지 않고 당해연도 곡가조절용 정부관리 양곡가격으로 환산하여 재해구호기금에서 별도 관리
- 구호물자의 보관관리 또는 교체시 소요되는 조작비 등의 소요경비는 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

라. 방역물자 확보·비축

1) 비축기준

○ 대상물자 :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등

○ 비축기준 :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관리사업 지침에 의거 비축 관리

○ 보관장소 : 일반 방역약품과 같이 보건소에 비축 관리

2) 확보·관리

○ 최소한의 비축 관리량을 상시 유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정기적으로 보관상태 점검

○ 유효기간이 있는 소독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그 기간내에 일반 소독용으로 대체 사용하여 변질방지

마. 침수방지용 장비 확보·관리

1) 확보기준

○ 종　　류 : 양수기, 수중펌프, 호스, 차수판, 비상발전기, 전선 등

※ 민간보유 대형 양수기 보유 현황 관리

○ 확보기준 : 침수피해상황 및 상습침수지역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침수되었던 과거 사례를 조사하여 적정한 소요량 확보

○ 보관장소 : 시군구·읍면동 창고, 관내 수해상습지역 등

2) 점검 및 관리

○ 보관장비는 우기전에 시험가동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

○ 보관관리는 행정기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에게 위탁관리로 구분하여 관리

- 보관창고내 장비는 관리카드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 위탁관리 장비는 개별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주민 전출·입시 장비를 회수하여 분실, 고장 등 이상유무를 확인 관리
- 재난발생시 주민 스스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수기 사용요령" 등과 같이 장비별 리후렛을 제작 배포 등 교육

3) 점검시기

○ 1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바.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1) 지정기준

○ 주 관 : 시장·군수

○ 지역별 최근 10년간의 이재민 발생 수, 과거 자연재난발생빈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시설의 규모와 장소 지정

- 수용시설면적은 1인 1평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용이한 건물로 지정하되,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 지양
- 급식 및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구호차량 진입이 용이한 학교 등 우선 지정
- 수용시설은 지진, 상습침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지대로 지정하되, 저지대 등 상습 재난발생지역내의 시설은 지정하지 아니함
-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양호한 지역 선정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 지정

2) 점검 및 관리기준

○ 수용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재민 발생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관리 상태 수시 점검

○ 수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수용시설 안내도 및 지정시설별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비치

○ 환기, 조명, 보온 등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확보

○ 화장실, 간이목욕실, 급수시설 설치 및 급수차량 확보

○ 이재민 급식을 위하여 민간구호단체와 사전협의

○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

○ NDMS 이재민 관리시스템에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입력

○ 대피시설 또는 읍면동별 응급구호품과 장비(재해구호물품 세트, 고무보트 등) 및 단전, 단수에 대비한 최소시설 확충

사. 침수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대책

1) 분뇨처리

○ 침수피해 발생시 인접 지역의 분뇨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및 협조체계 구축

2) 쓰레기처리

○ 침수우려지역은 피해발생 즉시 사용토록 최근 10년간 수해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지역실정을 감안, 읍·면·동별 1~2개소 이상 쓰레기 임시적환장 및 매립장을 사전지정

- 생활불편이 없는 도로 미 개통지역, 하천 둔치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임시적환장 및 매립장 설치

※ 위치선정시에는 2차 피해 여부를 반드시 검토 함

○ 대규모 피해시 군부대, 유관기관, 인접지자체 시·도, 자원봉사단체 등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장비·인력 등 지원 협조체제 구축

- 쓰레기처리 관련 민간단체와 자치단체간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비상연락망 작성 및 활용
- 협약을 체결하거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반드시 3~4월중 간담회를 실시하여 비상시 즉시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수해지역 수거 쓰레기는 규격봉투 없이 매립장에 반입,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2.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 국가 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자원봉사단체 및 지역주민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 재난예방·경감에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재시스템 구축

○ 신속한 장비지원을 위하여 체결한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지하수협회와의 협약 재점검, 비상연락망 정비, 장비보유실태 파악 등 협조체계 구축

○ 자치단체와 협력 군부대간 상시 협조체계 구축

나. 「지역자율방재단」 적극 활용

○ 재난 현지상황을 신속 파악 및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 재난예방을 위해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적극 활용

○ 재난상황 발생시 080무료전화를 활용하여 상황정보 수집

○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및 활동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실시

3.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 추진

가. 대상지역 : 상습취약지역 및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구

나. 전략과제

○ 인명피해 관련자료 D/B구축 및 대피기준 설정

○ 주민 안전의식 고취 등 주민 홍보강화

○ 사전대피계획지구 경계활동 강화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구 경계활동 강화

○ 위험지역 출입통제, 강제대피 등 주민통제 제도강화

○ 각종 재난정보 수집 및 전파기능 강화

○ 주민대피 및 통제활동 강화

○ 재해약자 인명피해 최소화대책 추진

○ “인명피해 경계령” 도입

4.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 확보방안

-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운　　용

-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
-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사용

[재난관리기금 용도]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 재난관리기금 적립계좌 별도 설정하여 기금을 적립·관리

[재난관리기금 현황]

◇ 현 재 액 : 18,208백만원(2010년말 현재)

○ 예 탁 금 : 6,897백만원(통합관리기금)

○ 예 치 금 : 11,311백만원(농협)

제3절 대응대책

1.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체계 확립

가. 근무체제 : 2단계(준비, 비상단계)로 편성·운영

○ 준비단계 : 상시대비단계와 사전대비단계로 구분

-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비상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도내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나. 실무반 편성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시

○ 실무반은 상황관리반, 종합상황반, 홍보반, 행정반, 보건복지반 경제통상반, 농정반, 문화여성환경반, 균형건설반, 구조구급반 등 10개반으로 편성하되, 실·국 주무 실·과·팀장은 대책반장을 보좌하며 근무반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상황관리반 : 정책기획관실, 감사관실, 예산담당관실, 성과관리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 종합상황반 : 치수방재과 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관 파견자 (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KT 등)
- 홍 보 반 : 공보관실 소속 공무원

- 행 정 반 :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소속 공무원
- 보건복지반 : 사회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경제통상반 : 생활경제과,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미래산업과, 국제통상과 소속 공무원
- 농 정 반 :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원예유통식품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속 공무원
- 문화여성환경반 : 문화예술과, 여성정책과, 관광항공과,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소속 공무원
- 균형건설반 : 균형개발과, 도로과, 교통물류과, 치수방재과, 토지정보과, 건축디자인과 소속 공무원
- 구조구급반 :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소속 공무원

다. 실무반 근무방법

○ 근무반원 편성은 2개조로 편성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사전대비단계 29명, 비상단계 44명)

○ 실·국·본부 근무자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실·국·본부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재난 상황에 따라 일부 대책반을 소집하고 그 외에는 각 부서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 유관기관 파견자는 종합상황반에 소속되어 상황실장 통제하에 근무한다.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상황관리 임무 수행

○ 근무시간동안 상황실에 정위치 근무(자리 이석시에는 반장 에게 보고)

○ 실무반원으로서 실무반의 장 지시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수행

○ 관련 중앙 및 시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중앙, 시군, 유관기관의 전화번호·담당자 등을 정확히 파악

○ 중식 및 석식은 실무반별 2교대 식사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라. 상황파악 및 보고체계

○ 보고시기

- 사전조치사항, 피해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대 수시보고
- 피해최종보고 : 피해원인 종료후 공공시설(7일), 사유시설(14일) 이내
- 피해확정보고 : 중앙·지방 합동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

○ 보고방법 : 전산보고(본부장의 지시가 있을 시 FAX 보고)
다만, 피해 확정보고는 서면보고

○ 보고서식

- 사전조치사항, 피해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재해대책상황 보고 자동집계시스템 입력 양식 준용
- 최종보고 :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확정보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합동조사단운영규정 제7조 및 동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 CP형 비상지원본부 운영 지원 및 상황공동관리제 운영

가. 재난현장 비상지원본부(CP) 설치·운영 지원

○ 통합지휘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현장지휘총괄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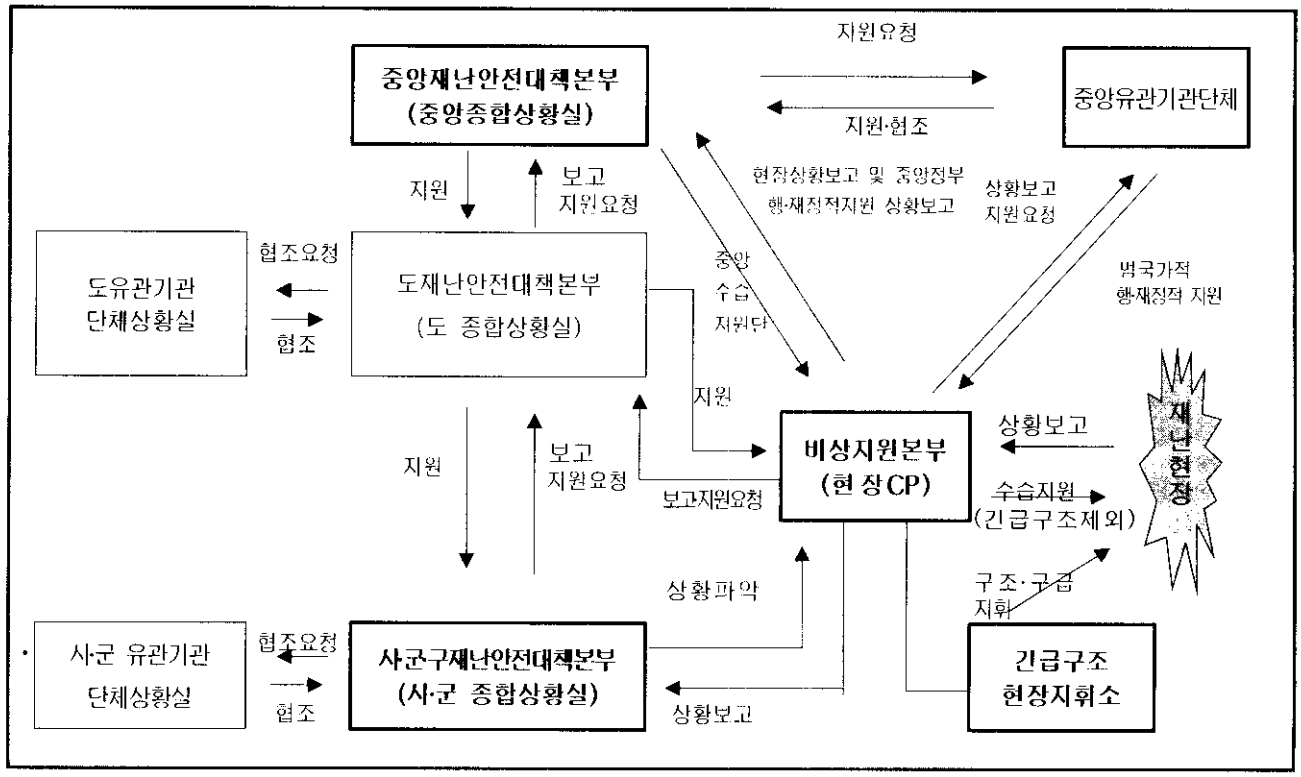
나. 도와 시군간 상황『공동관리제』운영

○ 파급효과가 큰 재난발생 예견시, 도대책본부 요원 사전 파견

- 현장 CP 지도,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지도관리기능 수행

※ 상황실과 현장 CP간의 Hot-Line 구축, 필요시 도수습지원단 파견

〈재난발생시 상황관리 체계도〉



3. 구조·구급 활동 전개

가.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구조

- 군부대의 구조·구급활동

나. 피해상황 파악·전파

○ 인명피해, 이재민발생, 주택·농작물 침수피해, 가축폐사 등 피해현황 파악 및 전파

4. 응급구호 및 복구활동 전개

가. 수재민 응급구호활동 실시

○ 사망·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장례위로금 지원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용 지원

나. 방역 및 방제활동 파악

○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파악

-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 침수가옥 등 방역소독

○ 침수농경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활동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폐사가축 매몰 및 방역

다. 주요시설 응급복구 실시

○ 도로·하천·교량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대책예비비 긴급지원

○ 파손된 공공시설에 대한 민관군 공동대응 복구

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 『재난극복 자원봉사 총연합』을 통한 재난지역 민간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 『재난극복 자원봉사 총연합』 현황

- 협약체결일 : '04. 9. 24
- 가입단체(7) :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극복범시민연합,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 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평상시]

-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D/B 구축
- 자원봉사활동 발전을 위하여 워크샵, 교육, 연찬회, 훈련실시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문회의의 구성·운영
- 구호품 수요파악, 구호기관 간 업무분담, 구호품 구매 및 비축

[비상시]

- 대규모 재난발생시 총연합의 구성원들이 확보한 인적·물적 자원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지역, 소요인력, 장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자원봉사 유도

5.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대응대책

가.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 풍수해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제 확립 등 대응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구축

○ 주민에 대한 재난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등

○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상황전달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

- 주민의 대피

·하천연안 저지대의 침수·고립예상지역과 산사태발생 예상지구, 저수지 붕괴위험 등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 재난사전조치 활동

·홍수, 이상고조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댐, 보, 수문, 배수펌프장, 양·배수장 등의 적절한 조작 및 사전조치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지

- 학생보호대책

·학생 수업실시 여부 검토 등 학생 보호대책 강구

나.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현장에 비상지원본부(CP) 설치·운영

- 통합지휘 : 도·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 현장지휘총괄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 긴급구조관련 현장지휘는 충청북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행

다. 재난정보 수집·연락 및 통신수단 확보

○ 피해상황 조기파악 활동

- 재난발생후 인명피해 및 국민생활 필수시설 등 피해상황에 관한 재난정보 수집,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응급조치 활동정보 교환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활동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 통신수단의 확보

- 재난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 조치

라.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활동

○ 침수피해의 확대방지

- 침수피해지역의 배수실시와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확대방지 등

○ 토사재난의 확대방지

- 토사재난위험장소를 점검,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나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 및 응급조치 등

마. 구조·구급 활동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구조 등

○ 고립지역 구조대책

- 고립예상지역 주민에 대해 군·경찰, 소방서 등 구조관련 기관의 연락처 및 신고요령 안내책자 배포 등

○ 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의 역할

-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구조·구급활동을 하고 구조·구급 활동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 협력

○ 피해지방자치단체의 활동

-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국가의 각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

○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각 기관에 의한 구조·구급활동

- 피해가 발생치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청 또는 상호협력 등에 의하여 구조·구급활동 등 지원

○ 기자재 등의 조달 등

-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는 원칙적으로 해당 활동을 실시하는 기관이 휴대 등

바. 의료활동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의료 구호반은 대피장소 및 재난현장에 구호소 설치
- 중상자 응급처치, 후방의료기관으로 운송순위 결정, 수송곤란자 및 경상자 의료조치, 조산구호, 사망자 확인 사체검안 등

○ 의약품, 의료 기자재의 비축

- 5일간 사용할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을 비축 보관 등

사. 교통 및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긴급연락체계 구축

○ 교통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재난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비상 및 예비통신대책 수립 등

○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위성통신, 무선통신 등 긴급통신수단의 확보 등

아. 교통두절지역의 소통대책

○ 사전에 지정된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차량흐름 유도

○ 의료소 및 의료기관 주변의 교통상황 점검 등

자. 이재민 대피·수용 및 구호

○ 이재민 대피 및 수용 관리

- 대피장소에 정보의 전달, 식료품, 청소 등에 관해 대피자, 주민,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체제 구축 등

○ 이재민 구호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재민 급식, 구호물품 공급 등 구호지원에 필요한 이재민 수용시설 주변 급수, 전기, 통신, 도로두절 등 이재민 발생상황 정보를 민간구호기관 등에 실시간 전파 등

차.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 비상급수

- 대상지역 : 정전으로 정수장 가동이 정지된 지역, 송·배수관 파손으로 단수된 지역, 이재민공동수용시설 등

○ 생필품 공급

- 생필품 중 필수품목만을 포장 피해발생 즉시 이재민에게 공급
- 기준에 의해 기 확보된 생필품의 긴급 수송시스템 확립 등

카. 시설물 응급복구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확보

-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는 전문인력과 기타인력을 구분하여,

- 기술이 필요한 전문인력은 지방노동사무소에 기타인력은 인근 부대에 지원요청

○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 시장·군수는 피해주택 이재민을 수용할 임시주택 건설예정지 및 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 관리
- 주택이 반파되었을 경우 건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응급수리 사용토록 하되, 주택수리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우선지원 등

○ 주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상수도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하수도시설

·하수도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복구반을 편성 운영 등

- 전기시설

·전력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공급 및 긴급 복구방안 강구

- 가스시설

·가스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통신시설

·통신두절로 재해응급 활동을 저해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 책임자는 본사 또는 산하기관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공공시설 복구

- 도로·교량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회 도로를 선정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등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재난발생시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등

- 공항시설

· 공항관리자는 공항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와 항공운항의 조기재개를 위한 필요 조치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등

- 철도시설

·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송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시행 등

- 사회공공시설

·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등 사회공공시설 관리자는 인명의 안전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 등

타. 군부대 지원요청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을 위한 민관군 공동협력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요청 등

파. 청소 및 방역

○ 청 소 : 침수피해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임시 지정된 적환장에 적치 및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 확보 등

○ 방　역 : 침수지역 및 공동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실시 등

하. 사회질서 유지 및 물가안정

○ 피해지역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과 자주방범조직 등에 의한 순찰 강화 및 안전확보 등

거. 자원봉사활동

○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재난구호협회, 재난극복범시민연합,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및 도, 시·군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

제4절 복구대책

1. 기본방침 및 추진방침

가. 기본방침

○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복구사업 수립 시행

○ 민생관련 시설의 조기복구를 통한 주민생활안정 도모

○ 현지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 시행으로 피해재발 방지

나. 추진방침

○ 피해시설별 특성을 고려 완공목표설정 추진

○ 복구계획 확정 즉시 용역발주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설계 등 조기 착공

○ 개선복구 사업지구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피해재발 방지

○ 시설별 세부복구추진지침에 의거 신속·정확한 복구비 집행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지보상 등 각종 지원단 구성 운영

○ 통합감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구공사 부실방지

○ 복구사업 집행의 투명성·정확성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지도·점검 강화

2. 복구의 종류

가. 응급복구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피해확대 방지 및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구 및 시설하는 것을 말함.

나. 기능복원 복구

○ 기능복원복구 : 재해가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동 시설을 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말함.

○ 개선복구 : 재해가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의 파손되었을 경우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동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함.

- 개선복구 대상

·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배수펌프장·저수지 또는 방조제 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해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과학적 재난원인 분석조사

○ 조사기관 : 경미한 피해 ⇒ 시·군 조사후 도 조사(확인)
우심지역 발생 ⇒ 자치단체 조사후 중앙 합동조사(확인)

○ 조사반 편성 : 피해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차출

○ 기 간 : 재난종료 후 공공시설(7일), 사유시설(14일)이내

○ 조사내용 : 피해원인, 피해액 확인,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사방법 : 현지조사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피해원인 분석,
피해 및 복구계획서, 재해대장 등

4. 재난복구비용의 중앙지원 대상 및 기준

가. 일반피해지역

○ 자치구 및 시군 단위로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 : 14억원
- 보통세등 연평균액이 100억원이상 350억원미만인 시·군 : 20억원
- 보통세등 연평균액이 350억원이상 600억원미만인 시·군 : 26억원
- 보통세등 연평균액이 600억원이상 850억원미만인 시·군 : 32억원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 : 38억원

○ 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군이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비우심)에 대하여는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 또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국고의 추가 지원기준(기준령 제7조)

-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의 지방비 총부담액이 국고지원 대상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력지수, 재해예방사업투자·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재해예방노력지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 차등 지원한다.

- 국고추가 지원액 산정방법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지원기준	구 분	국고의 추가지원액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3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100억원 이상 ~ 3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5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850억원 이상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5.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기능복원사업(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복원하는 사업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 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써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배수펌프장·저수지 또는 방조제 시설로서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난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6. 복구비 지원절차

가. 복구계획(안) 작성

○ 피해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

나.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 복구계획(안)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

○ 확정시달

- 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한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부처 및 시·도에 통보

다.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

○ 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예산조치 계획, 예산편성내역)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관계부처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는 예산과 재해의연금은 소관부처별로 즉시 예산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지방 예산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소관시설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라.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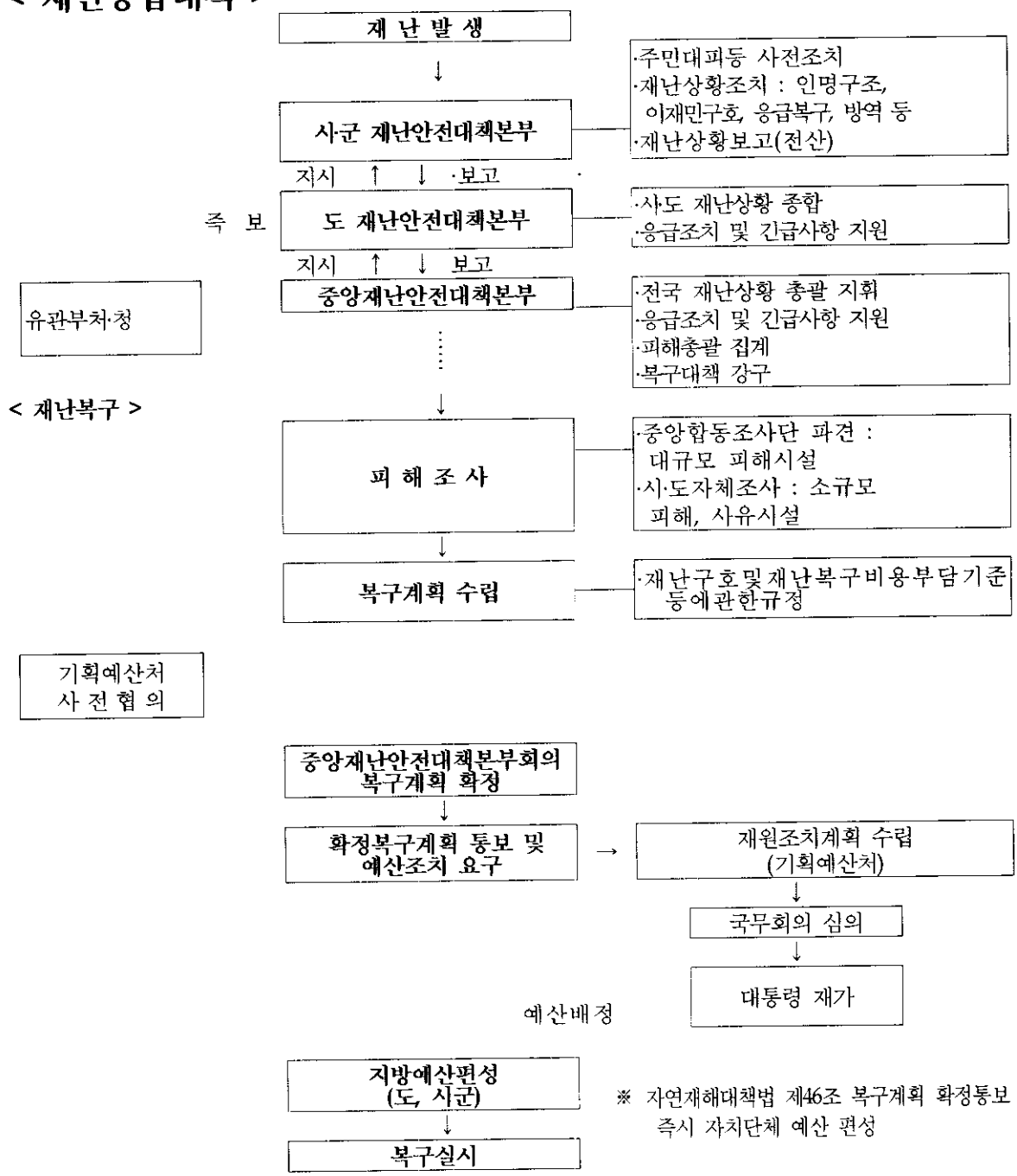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에서는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배정

○ 각 부처는 예산배정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한다.

○ 각 실과는 시군으로 예산내시 및 재배정교부를 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한다

마. 재해복구 흐름도

< 재난응급대책 >



<재난복구비용 부담액 및 부담률>

소관부처별	지원항목별	복구비지원내용	부담율(%)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소방방재청	1. 구호금	◦ 사망 : 세대주 10,000/1具, 세대원 5,000/1具 ◦ 부상 : 세대주 5,000/인 세대원 2,500/인	지원100			
	2. 응급구호	◦ 주택반파 이상피해자에 한하여 최초7일간 ◦ 1인 1일당 4(시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지원100			
	3. 이재민장기구호	◦ 주택이 전파·유실된자 2월간 구호 ◦ 주택이 반파된자 1개월간 구호	지원100			
	4. 세입자 보조	◦ 세대당 300만원 범위내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지원100			
	5. 공공시설	◦ 공공건물 ·국가관리 공공건물 및 부대시설 ·지방관리 공공건물의 부대시설 ◦ 소하천 ◦ 도시방재시설(펌프장 등) ◦ 수위·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등	100 50 50 50 50	 50 50 50 50		
	6. 응급복구	◦ 자재대 및 장비비	50	50		
	7. 보상금 및 손실보상금	◦ 관련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및 손실결정액	50	50		
농림부	1. 생계지원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100			
	2. 농경지 복구	◦ 농경지 유실·매몰(평균심도 10cm 이상)	지원60		30	10
	3.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등	지원35		55	10
	4. 농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 농약대 지원	지원50 지원100		30	20
	5. 축사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6. 초지 유실·매몰	〃			70	30
	7. 잠실 파손유실	〃	지원35		55	10
	8. 가축입식	◦ 피해 가축의 입식비	지원50		30	20
	9. 누에유실·폐사	◦ 당해연도 사육비	지원50		30	20
	10.농경지 매입	◦ 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	50	50		
	11. 공공시설	◦ 방조제, 공공건물, 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농림부관리 공공 소규모수리시설 ◦ 농기공관리 수리시설	 100 50 50 70	 50 50 30		
	12. 간접지원	◦ 영농·양축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부에서 별도지원			

소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구비지원내용	부담율(%)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교육과학기술부	1. 학자금 면제	◦ 고등학생학자금(수업료) 6개월분 지원	지원100			
	2. 공공시설	◦ 국립학교시설	100			
		◦ 공립학교시설	50	50		
		◦ 사립학교시설		50		50
		◦ 기타 공공시설	50	50		
행정안전부	1. 공공시설	◦ 지방도, 군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50	50		
		◦ 시도(시관내 국도, 지방도 포함)		100		
		◦ 농어촌도로	50	50		
		◦ 소규모시설(소교량, 농로, 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등)		100		
	2. 간접지원	◦ 각종 지방세 감면	별도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 공공시설	◦ 체육시설	50	50		
		◦ 문화관광부관리 공공건물	100			
		◦ 국민관광지시설	50	50		
문화재청	1. 공공시설	◦ 국가지정문화재	100			
		◦ 국가지정(위탁)문화재	70	30		
		◦ 지방지정문화재	50	50		
환경부	1. 공공시설	◦ 공원시설	100			
		· 국립공원	50	50		
		· 시·도립공원				
		◦ 상하수도시설	50	50		
		◦ 폐수·폐기물처리시설				
		· 국가관리	100			
		· 지방관리	50	50		
		◦ 기타 환경부관리 공공시설	100			
국토해양부	1. 사유시설	◦ 주택복구	지원30		60	10
	2. 침수주택수리비	◦ 재난기본지수 600	지원100			
	3. 공공시설	◦ 도로시설				
		· 국도(국도 대체우회도로 포함)	100			
		◦ 하천시설				
		· 국가하천	100			
		· 지방 1·2급 하천	50	50		
		◦ 철도시설				
		· 국가관리	100			
		· 지방관리	50	50		

소관부처별	지원항목별	복구비지원내용	부담율(%)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국토해양부	3.공공시설	◦ 마을기반조성	50	50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시설	100			
		◦ 항공시설	100			
		◦ 도시개발시설	50	50		
		◦ 수위우량관측소시설 등 건설교통부관리 공공시설 등	100			
국방부	1. 공공시설	◦ 군사시설	100			
농림수산식품부	1. 어선	· 40톤 미만	지원35		55	10
		· 40톤 이상			70	30
	2. 어망·어구	· 소규모(6천만원 미만)	지원35		55	10
		· 대규모(6천만원 이상)			70	30
	3. 수산물증양식 시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4. 수산생물 입식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5. 생계지원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100			
	6. 간접지원	◦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별도지원			
	7. 공공시설	◦ 어항시설				
		· 국가어항	100			
		· 지방, 어촌정주어항	50	50		
		· 소규모어항	50	50		
		◦ 항만시설				
		· 지정항만	100			
		· 지방항만	50	50		
		◦ 선박				
		· 국가관리	100			
		· 지방관리	50	50		
		◦ 어업 무선국시설				
		· 국가관리	100			
		· 지방관리	5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율(%)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 수산 식품부	7.공공시설	◦ 등대·해운시설	100			
		◦ 양식장·양어장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수산시설(수산물유통 제조시설 및 공동창고)	50		50	
산림청	1. 자목 및 표고 버섯 재배사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2. 산림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 농약대 지원	지원50 지원100		30	20
	3. 간접지원	◦ 영림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별도지원			
	4. 공공시설	◦ 산사태, 사방 및 임도시설 · 국유 · 지자체 및 사유림	 100 50	 50		
산림청	4.공공시설	◦ 휴양림 시설 등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수목원시설 ·국가관리 ·지방관리	 100 50	 50		
		◦ 기타공공시설 ·국가관리 ·지방관리	 100 50	 50		
경찰청	1. 공공시설	◦ 경찰시설	100			
청소년 위원회	1. 공공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국가관리 ·지방관리	 100 50	 50		

소관부처별	지원항목별	복구비지원내용	부담율(%)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산업자원부	1. 생계지원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100			
	2. 염전복구	◦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60		30	10
	3. 간접지원	◦ 염생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산업자원부에서 별도지원			
지식경제부	1. 공공시설	◦ 정보통신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① 고속국도, 통신, 전력등 국영기업체 관리시설과 종교시설 및 그 부속시설은 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② 개인시설인 가공공장, 유통시설, 도정공장과 사설 방조제·보·양수장등 사유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농림·수산시설 철거비는 지원복구 대상시설에 한하되 철거비 지원여부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7. 과학적 피해원인조사 및 복구사업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가. 피해조사체계 개선

○ 피해규모를 감안한 조사기간 차등적용

- 수해발생 규모에 따라 피해조사기간 탄력적용 규정마련

○ 피해조사장비 현대화

- 피해조사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장비 현대화

나. 복구지원체계 개선

○ 복구계획수립 허위·과장보고 방지대책 강구

- 복구계획수립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강화
- 중앙·자치단체 복구계획수립 담당자 교육실시

○ 자율적 재해예방 노력 유도를 위한 복구비 지원대상 상향조정

- 우심 및 비우심 시군 공공시설 국고지원 대상사업 상향조정

○ 복구비 국고추가지원방법 개선

- 지방비 국고추가지원 산정방법을 인구수, 재정력, 재해예방사업 투자 정도 등을 고려한 지수개발 활용
- 현행 3단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국고 차등지원 방안 마련

다. 복구사업 정산·집행 등 사후관리기능 강화

○ 수해복구예산의 총괄집행·정산제 도입

- 현행 시설별·부처별·지구별 집행·정산제도를 사업비가 부족한 타 지구에 활용토록 제도화

○ 수해복구사업 경제성 평가 등 사후분석기능 강화

- 복구사업 완료 후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토록 제도화
- 분석평가 결과는 재해경감대책 반영 등 정책환류기능 강화

8. 풍수해보험제도의 도입·시행

가. 홍수,태풍, 설해 등 자연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의 실시

국가예산 운영의 안전성 제고, 주민의 자발적 방재의식 고취 등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시행

나. 관계법령(풍수해보험법 등) 제정으로 제도시행 기틀 마련

○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주체, 보험가입·피해평가 방식 등을 법률에 명시

○ 보험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국가보험제도의 운영 등을 명시

※ '97. 10월부터 '03.11월까지 국립방재연구소, 보험개발원 등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험제도 도입방안 연구

⇒ 2008. 4. 1. 전시군 확대

제2장 설해대책

제1절 예방대책

1. 도로 제설 교통대책 수립

가. 도로제설대책 일반사항

○ 제설장비의 확보 및 사전 점검·정비 철저

- 제설차, 덤프트럭, 모래(염화칼슘)살포기, 제설삽날(덤프트럭용), 그레이더, 로우더, 굴삭기, 카고트럭 등

○ 제설작업요원의 제설취약구간현장 적정 배치

- 조종원, 도로보수원, 일용제설원, 미화원 등 기타 제설요원

○ 제설자재의 확보·비축 및 적사함 설치 관리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제설자재의 적정량 확보
- 교량 또는 노견이 협소하여 적사함 설치가 곤란한 어려운 지점은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으로 현장 비축
- 적사함은 응달부, 고갯길, 곡선부, 터널입출구 등 제설취약지점에 설치하고 염화칼슘, 모래, 삽 등 비치

○ 도로등급별 제설작업 우선순위 선정 및 집중 제설관리

- 국도 및 대로와 시·군간 연결도로
- 지방도 및 시·군도로서 읍·면간 연결도로
- 농어촌도로 등 기타도로로서 마을간 연결도

○ 교통두절 예상구간 관리강화

- 장비 및 인력 사전배치

· 고갯길, 강설다발지역 등 교통두절 취약구간에 대하여 제설장비 및 인력, 자재를 사전 배치하여 집중관리

- 우회도로 지정·관리

· 교통소통 취약구간, 최근 교통통제가 실시되었던 구간 및 교통통제가 예상되는 구간 등에 대하여는 우회도로 사전지정 및 안내대책 강구

- 고속도로 교통차단시 인접 국도, 지방도 제설작업 강화

· 교통통제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고립차량 발생 예방

· 비상연결로 및 중앙분리대 개구부 개방조치

· 개구부 설치간격 조정, 안전장비 및 인원 보강

· 도로관리청과 도로공사(지역본부), 자치단체간 공조체계 구축

나.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의 제설대책

○ 중점관리대상

- 교통두절 예상구간 : 135개소(괴산 문광 양곡 "굴티재"외 134개소)
- 중점 제설대상 : 125개소(청주 방서 시계-석교 육거리외 124개소)

○ 대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 특별관리

- 고지대 급커브 및 경사도로로서 폭설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취약구간을 자체 지정하여 집중관리
- 우회도로 사전지정 및 제설인원, 장비 자재 등 사전확보

○ 신설 도로 및 확장개통구간에 대한 제설대책 강구

○ 습염살포방식(염화칼슘수용액+소금)에 의한 도로제설 확대실시

○ 상황별 교통통제 실시(전면 또는 부분통제)

- 도로통제(先-제설작업, 後-차량통행)을 위해 경찰관서 등과 통행제한(금지) 협의실시 및 우회도로 안내

○ 교통량 및 지역 여건 등 중요도에 따른 제설우선 순위

① 국도 및 대로 등 시·군간 연결도로

② 지방도 및 시·군도로서 읍·면간 연결도로

③ 농어촌도로등 기타도로로서 마을간 연결도로

○ 폭설시 농·축·수산물 수송지연에 따른 물가 폭등 방지를 위한 간선 및 지선수송도로 제설방안 강구

○ 시·군 및 유관기관 제설 공조체제 구축

- 시· 군 ⇔ 도로관리사업소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군부대 등

○ 도로등급별 제설 담당기관(도로관리청의 책임제설 원칙)

- 일반국도 : 건교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충주, 보은)
- 시 관리국도, 지방도 및 시·군도 : 도 및 시·군, 읍·면·동사무소

2. 산악·고립지역 및 탐방객 안전대책

가. 산악지역 안전대책 : 등산로 통제

○ 대설시 산악지역 탐방로 통제구역 지정관리

- 월악산, 소백산, 속리산 국립공원 34개지구 통제소 설치·운영

○ 겨울철 탐방객 조난대비 안전대책 강구

- 대설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시 입산금지, 입산자 하산계도 및 안전대피 조치
- 탐방로 입구에 겨울철 등반자 숙지사항 안내판 설치 및 조난대비 등산요령 홍보
- 탐방객 일몰시간 이전 하산유도 및 야간산행 통제철저
- 개별적인 입산은 만류하고, 단체입산 또는 전문산악인과 동행하여 입산하도록 권고
- 빙벽훈련장 안전대책 및 빙벽훈련계획 사전신고 철저이행

○ 구조대책 합동상황실 운영 및 구조활동 체계정비

-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찰산악기동대, 민간산악구조대원 동원체계 및 구조장비 정비

나. 고립예상지구 안전대책

○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예상되는 지구를 중점 관리하고, 대피 장소 지정 및 구조대책 강구

3. 농·축산 시설 피해경감 대책

가. 비닐하우스시설

《단기대책》

○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

- 새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내재해형 표준규격 및 그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설치토록 지도
- 대농업인 홍보 및 교육실시
  · 비닐하우스 설치요령, 재료구입방법, 재난예방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 및 홍보실시
- 폭설시 비닐하우스시설의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 커튼이나 2중비닐을 열어 외부필름에 열이 빨리 전달되도록 하는 등 사전대비 철저
- 하우스 밴드(끈)등 느슨해진 것은 팽팽하게 당겨매기
- 특히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적설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설 초기부터 적극 가온을 실시하고 폭설로부터 시설물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닐을 찢어서 눈 제거
- 보조지지대의 활용으로 폭설에 의한 피해 대비

《중장기대책》

○ 현행 표준규격을 내재해형 규격으로 정비

- 실태조사 등을 통한 내재해형 규격선발 및 취약규격 폐지
- 표준규격을 특정모델 중심에서 내재해성 기준 병행 운영
- 지역별 기상여건을 고려한 신규 내재해형 규격 개발

○ 내재해형 규격시설 확대보급 촉진

- 재해복구비 지원대상시설을 장기적으로 내재해형 시설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
- 기존 시설에 대한 재해대비 우수 보강시설·장비 보급
- 기존시설 보강사업 지원사업 도입 추진

○ 시공품질의 향상방안 마련

- 시공자재의 규격설정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한 전문시공업체 시공 의무화 방안 검토

○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 주요 재해별 대응요령 및 풍수해 보험 등 가입 지도·홍보
- 지역별 기상특보에 대한 농가단위 전파체계 구축

나. 축산시설

《 단기대책 》

○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도록 계도

-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은 대설시 주요 피해대상이 되므로 사전 계도를 통해 피해발생 요소 근절

○ 해당 지자체에서 대설에 대비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설 및 시설보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기상청과 연계, 대설발생에 대한 수시 동향 파악 후 전파
- 대설에 대비 제설장비 및 버팀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재 파이프 등을 확보하여 사전 대비
- 제설 및 폐사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필요시 방역인력을 현장에 급파하여 방역활동 지원
- 고립지역내 가축사양의 어려움이 없도록 사료공급 등 지원체계 구축

○ 대설피해에 대비 지역여건에 맞는 축사시설 보강 계도

- 대설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의 축사건축시 버팀목 골조를 강화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축사시설 설치 유도

《 중장기대책 》

○ 표준설계에 따른 축사 신축 계도

- 신축중인 축사에 대해서는 표준설계에 따라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 특히, 재해피해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사시설 복구 유도

○ 축산농가 스스로 대설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등 가입 계도

- 현재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로는 축사기반시설 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해보험가입을 통해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다. 인삼재배시설 피해경감대책

○ 인삼재배시설 설치시 지역별 기후특성에 적합하고 다양한 「표준인삼경작방법」에 의한 규격으로 설치토록 지도 강화

○ 인삼재배시설 설치시 표준모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 발생시 표준모델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습해우려가 없는 지역에서는 가을철에 차광망을 지면으로 내려 피해 예방

○ 경작자 스스로 눈쓸어 내리기, 차광망 제거 등 행정지도 강화

제2절 대비대책

1. 대국민 홍보강화

○ 겨울철 재난에 대비, 대설 및 한파시 국민행동요령과 협조사항 등을 모든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홍보

○ 홍보기간 : '07. 11월 ~ '08. 3월까지

○ 홍보매체 : TV,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반상회 회보, 깃발, 스티커, 광고 전광판, 아파트 구내방송, 공문서 하단에 표어 게재 등

2. 도로교통대책 홍보

가. 홍보내용

○ 설해 및 긴급상황 발생시 국민, 운전자 행동요령 등

○ 적설대비 차량 안전장구 휴대 운행

○ 교통통제구간, 우회도로 등 교통상황 실시간 공지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눈치우기 조례

나. 홍보방법

○ 반상회 회보에 설해대비 협조사항 게재

○ 지역별 설해대책 사전조치사항을 지방 보도기관에 제공

○ 지방TV 및 라디오, 케이블방송 등을 최대한 활용

○ 기타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한 홍보계획을 능동적으로 홍보

○ 민간모니터위원에게 서한문 발송, 설해대비 재난상황관리 협조 당부 등

다. 대설시 국민행동요령

○ 차량운전자

-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기차, 버스, 택시등) 수단을 이용합시다.
-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합시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등에는 서행운전 합시다.
- 라디오, TV 등을 항상 청취하여 교통상황을 수시 파악 운행 합시다.
-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니 삼갑시다.
- 도로 공사구간 통행시에는 바닥이 미끄러우므로 서행 운전합시다.
-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합시다.
- 브레이크 사용시에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합시다.
-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운전 합시다.

○ 보행자

-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시다.
- 외출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합니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맙시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갑시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합니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속히 귀가합시다.
- 차도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여 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맙시다

○ 가정에서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시다.
- 내 집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사고를 예방합시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갑시다.
- 30㎝이상 적설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위에 눈을 치웁시다.
- 노후가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합니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직장에서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합시다.
-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수단을 이용합시다.
- 직장 주변의 눈은 내가치워 건전한 주인정신을 발휘합시다
- 직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시다.

○ 농촌에서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등의 보호조치를 합니다.
- 비닐찢기 작업시 안전사고에 유의합시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를 보호합시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라디오, T.V등을 청취, 폭설 등 기상상황을 수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 폭설 등으로 인한 고립차량 운전자 행동요령

○ 출발전 기상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월동장비와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 준비합시다.

○ 고립·정체시에는 가급적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 후 행동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탈할 경우에는 연락처와 키를 꽂아 둔 채 대피합시다.

○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등이 있을 경우 응급환자 및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 대피시킵니다.

○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 차량히터 작동시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둡니다.

○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출발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 수면은 가급적 피하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수면을 취하며 한사람은 항상 주위 상황을 살핍니다.

○ 소방방재청 제공 휴대폰 문자방송의 상황전파를 확인하고 행동합니다.

○ 제설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하여 갓길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합시다.

○ 차량고장 등의 상황발생시 즉시 도로관리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에 연락을 취합니다.

○ 휴대폰 등을 이용 가족 및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도로관리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합시다.

마. 재난방송 자막 및 스파트방송 협조요청(공문안)

○ 방송법 제75조(재난방송)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제19조(재난방송)와 관련하여

○ '○○년 ○○월 ○○일 ○○:○○ ○○지역에 대설주의보(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위 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난방송을 요청하오니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자막표출 등 재난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 송 문 안 -

- 오늘 ○○:○○ ○○지역에 대설주의보(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 해당지역 주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차량을 주차할 때는 도로변 주차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집 앞의 눈은 스스로 치우며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눈도 수시로 쓸어내려야 하며 수산 양식 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등산객들은 조속히 하산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겠습니다. 끝.

수신처 : 방송위원회, 각 언론사(TV, 라디오), 신문사 등

제3절 대응대책

1. 설해발생 직전의 대책

가.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근무체제 확립

○ 근무체제 :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관리체제 구축

- 평상시 :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강설시 : 적설량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비상근무 실시

구 분	내 용	근무형태	비고
대설주의보	- 24시간내 신적설 5㎝이상 예상시 ※ 지역구분 없음	사전대비체제 가동	
대 설 경 보	- 24시간내 신적설 20㎝이상 예상시 단, 산지는 30㎝	비상근무체제 유지	

※ 풍수해대책에 준한 근무체계 구축

- 필요시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근무
  -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직원의 실무반 편성운영
  - 상시대비체제,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

○ 보고체제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보고
- 재난관련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보고

예) 도로의 경우 보고체계

•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지사에서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에서 시·군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에 통보

• **국 도**

건교부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 도 및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지방도 및 시·군도**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 보고단계

- 최초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재난 발생시 지체없이 서면·모사전송·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 중간보고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에 의하여 재난수습기간 중 수시로 보고
-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 후 종합 보고

○ 보고방법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상황판단회의 운영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실무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결정 등

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국가 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자원봉사단체 및 지역 자율방재단으로 하여금 재난예방·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재시스템 구축

○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가 대상지역의 소요인력·장비 등을 파악하여 통보함으로써 적시·적소에 신속 투입

라. 재난대비 관·군(軍) 협력체계 구축

○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군(軍) 장비 및 인력동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운영

○ 군부대의 장비·인력에 대한 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재해 발생시 지원절차에 따라 우선지원방안 강구

○ 군부대와 자치단체간 신속한 상황전달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 필요시 군부대 관계자의 지역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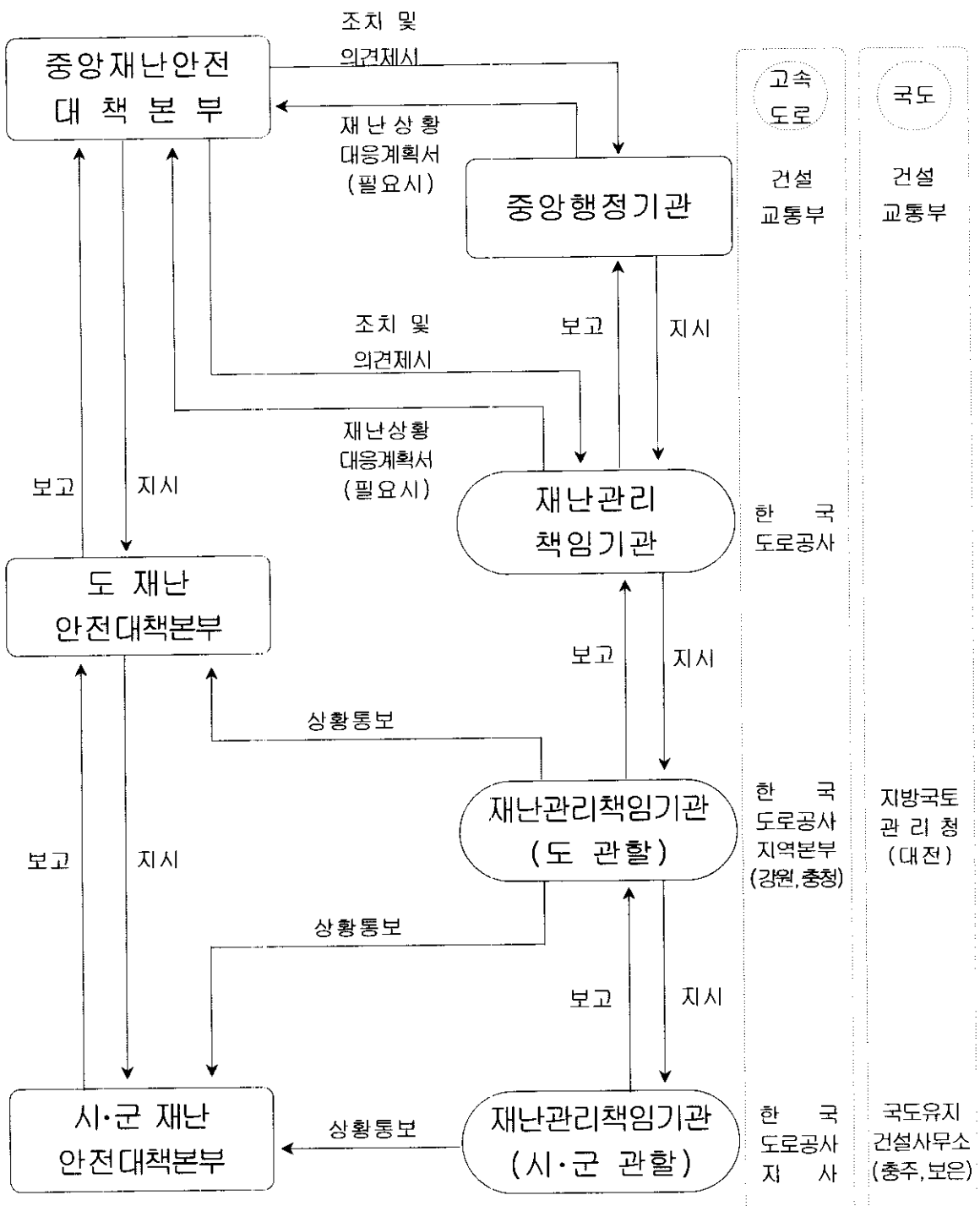
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현지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처하고,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적극 활용

○ 재난상황 발생시 080무료전화를 활용하여 상황정보 수집

○ 080무료전화는 지역자율방재단 뿐 아니라 누구나 재난상황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상황보고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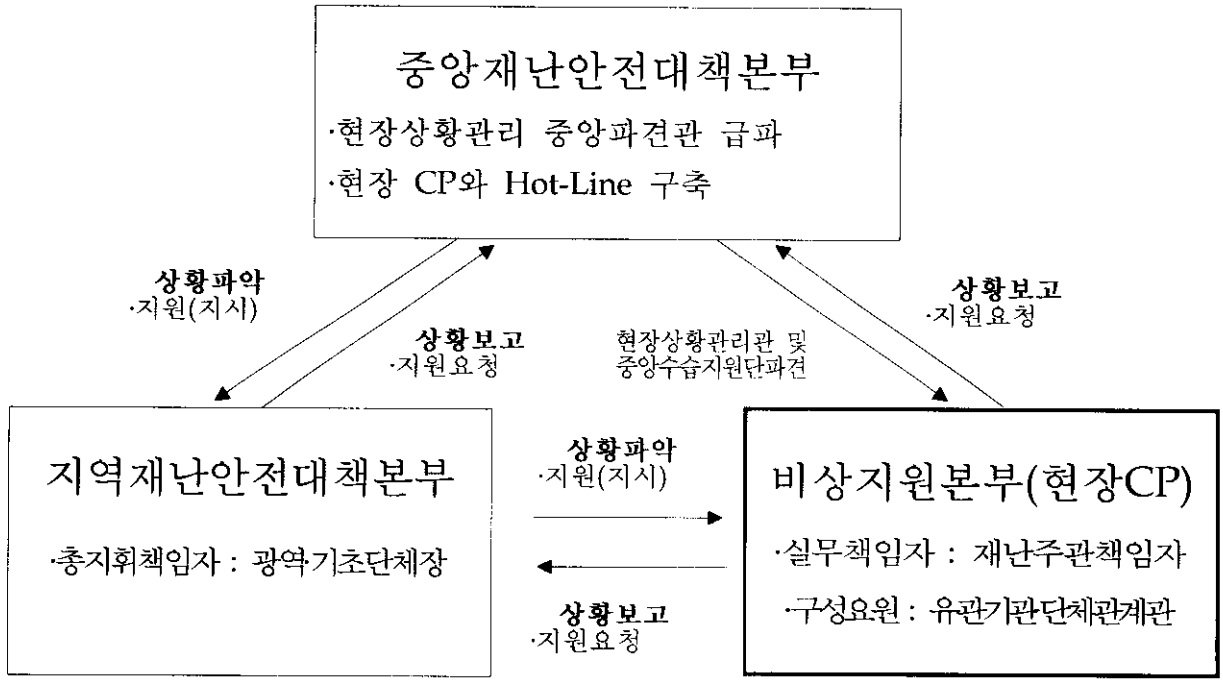

조치 및
의견제시
중앙재난안전
대 책 본 부
재 난 상 황
대응계획서
(필요시)
중앙행정기관
조치 및
의견제시
보고
지시
재난상황
대응계획서
(필요시)
보고
지시
재난관리
책임기관
도 재난
안전대책본부
보고
지시
상황통보
재난관리책임기관
(도 관할)
보고
지시
상황통보
보고
지시
시·군 재난
안전대책본부
상황통보
재난관리책임기관
(시·군 관할)
고속
도로
국도
건설
교통부
건설
교통부
한 국
도로공사
한 국
도로공사
지역본부
(강원,충청)
지방국토
관 리 청
(대전)
한 국
도로공사
지 사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충주,보은)

2. 재난발생 직후

가. 현장지원본부(CP) 및 현장책임자 전진배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군 CP개념의 비상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책임자 전진배치

○ 유관기관·단체관계자로 구성, 지역본부장이 지휘를 책임지되 재난주관기관 책임자를 실무책임자로 지정·운영



나. 재난상황대응계획서 및 행동 매뉴얼 등 적극 활용

○ 군작전 개념을 도입하여 지형·지세, 위험요인, 담당구역·시설별 책임자가 명기된 대응계획서를 작성 활용

○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진 자연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 적극 활용

○ 체계화된 대응계획서 및 행동매뉴얼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한 상황대처로 피해 최소화

다. 도로별 제설현황 파악

○ 도로별 제설작업 파악

- 도로관리청 주관하에 위험구간 우선 실시
  - 교통량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 제설자재, 장비 집중배치 및 제설 실시
- 제설작업은 가능한 정상운행하에 실시하되, 필요시 제설차량 통행에 필요한 교통통제 실시
- 국도와 지방도의 연결구간, 시·군 경계구간 등 제설 취약지구는 합동 제설작업 실시

라. 물류수송지연 방지대책 강구 및 협조

○ 폭설시 농·축·수산물 등 각종 물류수송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간선 및 지선도로 제설대책 강구

바. 고립예상지역 현황파악 지원

○ 동원인력 및 장비 동원

- 사태발생시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고립예상 지역별로 동원인력 및 장비 동원 협조
- 동원우선순위는 인력은 공무원 주민순으로, 장비는 관보유 민간보유 순으로 동원
- 설해 취약지역은 기 지정된 모니터위원 등을 활용하여 설해상황을 수시 파악 즉시 대처

○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 동원

- 군·경찰·산림청·소방 등과 인명구조용 헬기지원 협조
-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으로 상호 지원 협조
- 긴급상황에 대비 비상출동대기조 편성 운영 지원

《관계기관별 주요 협조사항》

□ **공통사항**

○ 각급 기관장 정위치 근무 등 비상근무태세 유지

○ 소속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 긴급대응체계 구축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소관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대책 강구

□ **공보관**

○ 매스컴을 통한 각종 기상정보의 신속한 전파

○ 폭설대비 주민 행동요령의 대대적인 홍보 추진

□ **교육청**

○ 폭설 피해지역 임시휴교, 단축수업 등 검토

○ 언론매체를 이용, 학생보호를 위한 홍보 강화

□ **군**

○ 군(軍)보유 제설장비 및 동원 병력 지원체계 구축

○ 제설 및 응급복구작업 동원 가능 군부대 투입 검토

○ 응급복구 예하 군부대 주변 도로의 제설작업 실시

□ **농산지원과**

○ 비닐하우스,축사시설 등 농림시설 피해대책 강구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민 홍보 및 계몽교육 실시

○ 재해위약시설은 재해위험지구로 중점관리하면서 개보수업 우선추진

○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 강구

○ 영농기전 수리시설 점검·정비 및 수방자재 확보상황 점검 조치

○ 집중호우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배수장 등 비상대비 가상훈련 실시

○ 유관기관 및 농업관련기관·단체 비상근무체제 정비

○ 위험지역은 안내판 등 경고문을 설치하여 인명사고 방지

□ 원예유통식품과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시설 등 농림시설 피해대책 강구

○ 시설원예 등 특작시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강구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민 홍보 및 계몽교육 실시

□ 축산과

○ 수산증·양식시설 등 피해경감대책 강구

○ 양어장 등 어장별 담당공무원 순찰 등 보호대책 강구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민 홍보 및 계몽교육 실시

□ 교통물류과

○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강화

○ 운수업체 안전관리 지도 및 주행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사고많은 지점, 위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

○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운수, 건설기계 등) 비상근무체제 정비 및 재난발생시 장비지원 협조체계 구축

○ 철도, 버스, 지하철 등 비상시 대중교통 수단 강구

□ 도로과

○ 지방도, 시군도 등 교통통제 및 제설대책 총괄 추진

○ 지방국토관리청, 자치단체와 협조, 교통소통대책 강구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 시설물 관리청별로 인역 및 장비 확보

□ 경찰청

○ 폭설상황에 따른 교통통제 등 비상근무 실시

○ 주요 교통취약구간 기동순찰반 배치

○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 흐름 조정

□ 한국도로공사

○ 경부고속도로 등 정체구간 조기소통대책 추진

· 긴급상황시 도로공사의 교통통제 권한부여

· 중앙분리대 개구부 개선

· 국도·지방도와 연접구간 연결로 설치

· 안전시설 보강 등

○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교통취약지구 집중 관리

○ 방송사와 협조, 고속도로 교통정보 등 수시 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

○ 폭설에 따른 단계별 국립공원 입산통제계획 수립 추진

○ 유관기관과 협조, 조난자 구조를 위한 헬기지원체제 구축

○ 등반객, 조난자를 대비한 비상대피소 설치 운영

제4절 복구대책

1. 복구의 종류

가. 응급복구

○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시설의 피해 확대 방지 및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구 및 시설하는 것을 말함.

나. 항구복구

○ 원상복구 : 재해가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동 시설을 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말함.

○ 개량복구 : 재해가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의 파손되었을 경우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동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함.

- 개량복구 대상

·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배수펌프장·저수지 또는 방조제 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해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피해조사

○ 풍수해 조사와 동일

3. 재난복구비용의 대상 및 기준

○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적용 기준

제3장 가뭄재난대책

제1절 예방대책

1. 가뭄발생 예상지역의 가뭄대책장비 점검·정비

○ 시장·군수는 자체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정비 실시

○ 도지사는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시 즉시 확보

2. 물절약 대책 추진

○ 물 다량 사용업소 및 초·중·고·대학에 절수기 설치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물 다량 사용업소에 중수도 및 절수기 설치 의무화

○ 집단못자리, 반복수 이용 등 절수영농계획 수립

○ 과수, 채소 등 밭포장의 피복관리 등

3.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 상수원 상류지역 갈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강화

○ 수계별 환경오염 우려업소 중점 단속

4.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가뭄대책 수립 추진

○ 상습가뭄지역에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개발계획 등 중장기 대책 수립

○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체계의 확대 검토

- 예비용수 공급시설 및 관로 복선화

5. 도서지역 및 농촌지역의 지방 상수도 확충

○ 도서지역의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식수 전용저수지 설치

○ 농촌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

6. 농업용수 예방대책

○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 및 항구적인 농업용수 개발 추진

○ 수리시설, 양수장비 정비점검 및 부족한 장비의 사전보충 실시

○ 논물 가두기, 간이보 설치 등 용수확보대책의 사전점검 및 준비

○ 용수 부족지역은 농작물을 선별파종하는 등 피해예방대책 강구

○ 관정개발계획 수립 추진

○ 양수장비 및 지하수 관정 점검·정비 강화

제2절 대비대책

1.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 생활용수 : 4단계(10~30%감량 → 50%미만 감량 → 50%이상 감량 → 급수중단)
○ 농업용수 : 가뭄 대비 사전 → 가뭄 우려 → 가뭄 확산 단계

가. 생활용수 분야

〈1 단계〉

○ 1-1 단계(10% 감량 공급시)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 급수
-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등)

○ 1-2 단계(10~30% 감량 공급시)

- 시·군별로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 물 다량 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등)
- 공공건물, 대형빌딩 절수 확대
- 공공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 각 가정별 절수 적극 유도

- 식수용 지하수 개발
- 격일제 또는 3일제 제한급수 실시
-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 단축 또는 임시휴업
- 농업용 수원지(저수지, 지하수) 활용조치

〈2 단계〉 - (30~50% 감량 공급시)

○ 인근 시·군간 긴급 급수지원
○ 물 다량 사용업소 자율 휴무실시
○ 식수용 관정 개발 확대
○ 민방위 비상 관정 이용
○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 군부대 인력·장비 지원 비상급수

〈3 단계〉

○ 3-1 단계 (50~60% 감량 공급시)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 산업용수 공급단축·중단
- 개인 및 민방위 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 3-2 단계 (60%이상 공급 감량시)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수돗물 다량사용업소 격일제 영업

〈4 단계〉 - 급수중단

○ 먹는 샘물 공급
○ 최소한의 식수 배급제 실시
○ 개인 관정 공동이용

나. 농업용수 분야

〈가뭄대비 사전 단계〉

○ 기상전망, 지역별 강수상황 및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파악

○ 논·밭 토양 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상황 조사
○ 평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상청, 농진청, 도/시·군을 통한 상황 파악
○ 수리시설·양수장비, 용·배수로 사전 점검, 용수확보에 주력
○ 수리불안전답 등 농업용수 부족지를 파악하여 논 물가두기 추진
○ 가뭄대비 농작물관리 및 재배요령 홍보·지도
  - 예비 못자리 설치 및 가뭄 상습지 내만식성 품종 재배
  - 퇴비, 볏짚 등 유기물 피복으로 토양수분 증발 억제 지도
  - 용수확보 불가능지역은 건답직파 등 작부체계 개선 지도
○ 저수지 물넘이 돋우기, 간이물막이 등 농업용수 최대확보 및 물관리 철저
○ 항구적인 농업용수대책 추진
  - 논·밭 용수개발 및 기존시설보강, 지하수 개발 등 지속추진

〈가뭄우려 단계〉

○ 지역별 강수상황 및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파악
○ 논·밭 토양 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상황 조사
○ 농업용수 부족과 농작물 생육부진 및 부분적인 피해발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도(시·군)에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기관간 협조체제 유지
○ 가뭄지역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조적인 가뭄극복 운동 전개
  -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유류대, 전기료 등 지방비 지원
○ 모내기 지연에 따른 못 자리모 노화방지 및 절수형 영농추진
  - 수로, 논두렁 등을 정비하고 비닐 깔기 등으로 물 손실 방지
○ 관정, 송수 호스등 양수장비를 이용, 농작물 급수대책 추진
○ 암반관정, 간이용수원 개발 등 긴급용수 개발 계획 수립 추진
  - 공사중인 지구의 조기 부분급수면적 최대한 확보 및 관정 등 용수원 개발 지원
○ 양수장비 배치망 구성 및 인력지원 계획 수립

○ 지역단위 기술지원단 현지파견 지원

- 도(행정·지도) 영농, 수리시설, 양수장비 등 기술지원

○ 가뭄지역은 논·밭 구분 없이 초동단계부터 급수 대책

〈가뭄확산 단계〉

○ 논·밭 건조지역이 늘어나고 농작물의 시들음 현상 확산

- 건조 : 토양수분 함량 40%미만

○ 농작물의 파종 및 발아, 정식지연 지역이 확산되고 고사 등의 농작물 피해 발생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도(시·군), 농업관련기관·단체의 가뭄대책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여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

○ 가뭄극복을 위한 총동원 지원체제로 전환

○ 관정, 양수기, 송수호스 등 양수장비를 총동원하여 농작물 급수대책 추진

○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등 총력 지원

- 관계부처에 인력·장비지원 및 일손돕기 추진

-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정업체 보유장비 총동원 지원

○ 늦모내기 논 병해충 방제 및 비배관리 중점 지도

○ 모내기가 불가능한 논은 대파 지원

○ 농진청,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지원단 현지파견 및 인근 군부대 장비인력 지원

- 영농·양수장비, 수리시설 기술지원단 현지 지원

- 군부대 인력 및 중장비 가뭄지역 현지 지원

○ 양수기, 송수호스 등 양수장비를 가뭄지역에 전수 배치하여 다단 급수, 양수저류 등 적극 추진

○ 간이용수원, 관정 등 용수원 개발 확대 지원

○ 가뭄극복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강화

○ 다목적 댐 용수를 농업용수로 방류 협조 요청

2. 절수운동전개 등 대국민 교육

○ 자막방송 및 특집프로 제작 홍보

- 지역방송 매체 및 CATV 등을 통한 절수운동 전개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 → 저수, 절수, 용수개발

3. 가뭄대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조사 활성화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연구개발 지원

○ 가뭄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집적, 연구시설 확충 등

4. 가뭄발생 예상지역 관리

○ 한해 장비 점검·정비 지원

-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영농기 전·후 점검·정비 실시
-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 보충

○ 기상분석 및 생육상황 관찰

- 지역별 강우량, 저수율 파악 및 정밀 분석
- 논·밭의 토양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 상황 파악

○ 가뭄발생 우려지역의 조치사항

- 가뭄대책 유류대, 양수장비 배정 및 중장비 지원
- 기술지원단 현지 파견, 용수원 개발 지원
- 양수, 절수재배 등 가뭄대책 추진

○ 가뭄 확산 단계의 조치사항

- 중장비 지원, 용수원 개발 예산 지원
- 가뭄대책 추진체제로 전환
- 용수원 확대 개발(관정, 하상굴착, 간이용수원 등)
- 양수장비 및 인력동원 급수 추진

제3절 대응대책

1.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가. 평상시

○ 관련 실과별로 상황을 유지하되 필요시 가뭄관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상황관리체계 구축 시행

○ 강수량 및 저수율, 기상예보 등을 통해 가뭄상황 파악

○ 물 부족 우려지역 용수대책 추진

○ 수리시설, 한해장비 점검·정비 계획수립 및 실시

나. 가뭄시작 단계

〈도〉

○ 가뭄현상이 2개 시·군 또는 2개 분야 이상 나타나고 가뭄 지속이 예상될 때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가뭄대책 업무를 관장하되 업무 비중이 높은 실·과·팀에서 총괄 상황관리하고, 관련 실·국·본부별 상황관리

○ 지역내 유관기관·군부대·각종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시행

○ 공무원, 군인, 예비군, 민방위 및 주민 등 인력동원 계획 수립

○ 민·관·군 보유 가뭄대책장비 동원계획 수립

〈시·군〉

○ 가뭄현상이 2개 읍·면·동 또는 2개 분야 이상 나타나고 가뭄 지속이 예상될 때

○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가뭄업무를 관장하되, 업무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총괄 상황관리하고, 관련 실·과·팀별로 상황관리

○ 지역내 유관기관·군부대·각종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시행

※ 가뭄현상과 시·군 특성에 맞도록 상황관리체계 구축·시행

다. 가뭄 확산 단계

〈도〉

○ 가뭄현상이 5개 시·군 이상 나타나거나 장기 기상전망에 가뭄 지속이 예상될 때

○ 가뭄대책업무를 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하고 각 실·국·본부별 상황관리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 실시

○ 지역관내 유관기관(기상대, 농진청, 농협, 한농공, 수공, 지방국토관리청, 한전 등) 및 군부대, 각종단체, 기업체 등과 가뭄 극복 총력지원체제 구축 시행

○ 민·관·군 보유장비 총동원 양수급수 실시

○ 양수장비 수리점검반 순회 지원

○ 가뭄극복 3대 운동(저수·절수·용수개발) 전개

○ 용수대책 총력추진 및 용수개발 확대

〈시·군〉

○ 가뭄현상이 5개 읍·면·동 이상 나타나거나 장기 기상전망에 가뭄지속이 예상될 때

○ 가뭄대책업무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하고, 관련 실·과·팀별 상황관리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 실시

○ 지역관내 유관기관 및 군부대, 각종단체, 기업체 등과 가뭄극복 총력지원체제 구축 시행

※ 가뭄현상과 시·군 특성에 맞도록 상황관리체계 구축 시행

라. 절수운동전개 등 대국민 홍보

○ 지역방송, 유선방송, 신문등을 통한 절수운동 전개

- 자막방송 및 가뭄극복관련 프로그램 제작 방영 등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 → 저수, 절수, 용수개발

○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강화

제4절 복구대책

○ 중앙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뭄피해에 대한 복구

○ 가뭄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 지원

- 이재민 구호,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 지급 등

○ 가뭄 대책으로 용수확보를 위하여 사용한 유류 및 전기료 지원

○ 양수기 등 가뭄 대책용 장비구입지 지원

○ 양수용 펌프 및 관정설치비 지원

제4장 지진재난대책

제1절 예방대책

1. 지진 예방대책

○ 위험시설물의 점검·정비

- 다중이용시설
  - 5층이상 아파트 및 연면적 5,000㎡이상의 판매시설등 다중이용시설물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각종 시설물의 관계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
  -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 공공시설
  - 도로, 철도, 댐, 하천 등 대규모 재해 유발요인이 있는 시설물은 특별법 또는 각종 시설물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
    - ► 산사태, 산지재해, 토석류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 도로, 하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 ► 항공청사, 철도역사, 각종 집회시설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 ► 화약류 저장소, 취급업소 등 폭발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 지하굴착작업장 등 붕괴우려가 있는 대형공사장

○ 화재예상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실시

- 석유, 화약류, 화학약품 등의 보관시설, 가스보관, 독극물 취급, 방사선 사용 시설 등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조치
  - 비축기지별, 유형별로 계획 수립
  - 비축기지별로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직원별 임무부여 및 교육실시
  -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도시가스시설 누출방지대책
  · 가스누출에 대비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
  · 가스누출시에 대비 자동차단장치 설치 확대 등
- 인화·발화·폭발성 또는 독성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사업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방지대책 추진
  · 안전운전지침, 안전작업허가 및 근로자 교육계획 등 안전운전계획 이행 실태 점검
  · 위험성 확인·피해최소화 계획수립·시행
  · 공정의 안정성 이행 확립지도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지도

○ 화재방지대책 강화

-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활동체제 정비
  ·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 주관하에 인접 소방서와 응원체제 확립 화재 발생시 조기 진압
- 소방활동로 지정, 소방활동 곤란지역 해소계획 등을 수립 추진
- 정보·통신체제의 정비
  · 지진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통신체계 조기 복구계획 수립
  · 유·무선 통신용 119전화 회선 확대
- 새로운 화재진압장비 확보(공중, 대형저수지)
  · 대형저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동력펌프가 부착된 소방차 확보
  · 공중살포를 위한 화재진압장비 확보
- 2차 피해확산 방지시설 설치
  · 연소 방지기능을 가진 수림대 및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완충 농지공간 확보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 대상시설물 : 31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한 건축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 항공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 하천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목적 댐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력에 따른 댐 중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리, 터널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본선박스, 다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송유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수도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어촌 어항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원자력법 제2조 제2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자력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설비 중에서 같은법 제16조, 제25조 제1항, 제30조의2 제2항, 제30조의3 제2항 및 제33조 제3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시설

○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조사

- 조사실시
  - · 자치단체별로 각 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물론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시설물도 포함하여 일제조사
  - · 공공시설은 관계부서 또는 산하기관을 통하여 조사
  - · 사유시설물은 소관부서 주관하에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조사
- 조사결과 조치
  - ·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추진
  - · 기존시설물에 대한 보강기준은 관계부서 주관하에 마련

○ 내진설계기준 적용실태 지도·감독 강화

- 대상시설물
  - · 지진재해대책법상 31개 법정시설물을 대상으로 개별법에서 규정한 내진설계 기준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진설계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설치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 추진계획
  - · 내진설계 대상시설 중 이미 기준이 설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허가 및 공사 발주전 적용여부와 상위기준의 법령근거 등 보완현황을 확인하고 하위기술기준의 연구, 상황을 파악하여 예산확보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부서 등에 적극 지원 촉구
  - · 교육기관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지진재난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 건축물, 토목시설물, 학교시설,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방재관련시설 등 내진성 확보 및 액상화 방지대책 강구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기준 보완·제정 및 관계법령 정비 추진

· 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

- 전 시·군 우기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점검·정비
  · 통보대상자 우기전 일제 점검·정비 및 DB 수정(크로샷시스템)
  · 통보대상자 DB 확대 구축(크로샷시스템)
  · 마을앰프시설 보강 및 우기전 점검·정비(자동음성통보장치)
- 여름철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가동(12개 시군)
- 추진계획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 및 통보대상자(이장 등) 정비 : '11. 1~4월
  · 여름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가동 : '11. 5~10월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가동결과 분석 : '11. 11월

○ 지진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 관련 부서·기관별로 지진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 관련 부서 및 기관은 지진재난 관련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적용할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활용

2. 국민의 자율방재의식 고취

○ 지진방재교육

- 민방위대 실무교육강사 및 각급 기관의 지진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중앙 및 도에서 집체 및 전파 교육 실시
- 시군 주관으로 기능별 교육
  · 연 1회이상 군,경,소방,학생, 주민 등에 대한 교육실시

○ 지진대비 도상 및 실제훈련

- 도상훈련은 전 시군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하고, 실제훈련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시 지역특성에 맞게 훈련 실시

- 지역 및 직장단위의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규모(M) 6.0의 지진피해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훈련 실시
- 지진취약지역은 민방위 훈련시 지진훈련 중점실시
- 관련기관별·기능별로 훈련 실시
- 재해 유형별로 경찰, 소방, 군을 비롯한 민간기업이나 자원봉사자 모두가 참가하는 종합훈련 실시
- 가정, 기업, 지역에서 구급약품이나 피난복을 상시 비치토록 의무화

○ 지역자율방재조직 구축

- 수방단을 정비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원로, 통·리장,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실효성 있는 지역자율방재조직체계 구축
- 지역자율방재조직의 도 단위 네트워크 구축
- 재난발생시 신속한 민방위대의 동원체제 구축

○ 국민 방재활동의 기반조성 지원

- 자원봉사자 환경정비
- 민간봉사 단체의 활동 환경정비
- 민간봉사자의 활동거점 확보

3.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예방대책

○ 도시의 공간확보 및 기능분산

- 지진취약지역 도시에 공원, 녹지 등 Open Space 확보
- 지진발생시 대피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 수립시 반영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분산 배치

- 지진발생으로 도로·철도 등이 동시에 파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설하는 도시 등에는 사전에 도시기반시설 분산 배치
- 도시계획 등 각종 시설계획 수립시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 도시의 방재성 강화

-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내진·불연화
- 녹지대의 계획적 확보로 지진에 강한 도시구조의 형성

○ 위험시설물의 점검·정비 강화

- 지진발생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
- 도로, 하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 화재예방시설물 등의 점검·정비 및 혼란방지

-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비축기지별, 유형별로 진압계획 수립 추진
- 터미널, 극장, 역,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혼란방지대책 수립

○ 화재의 확대 방지

-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활동체제 정비
- 새로운 소화체제 정비(공중, 대형저수지)

○ 긴급수송의 대책 확보

- 긴급수송활동을 위한 수송시설 및 수송거점 지정
- 긴급수송로로 지정된 수송시설, 수송거점 및 도로교통관련시설의 내진성 확보와 도로관리체제 정비

○ 생활필수품 등의 공급체제 정비

- 물자의 성격에 따라서 집중 비축 또는 대피장소의 위치를 감안한 분산비축 등의 체제 정비
- 식료품, 물,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 및 통신기기 등의 물자 비축 또는 조달체제 정비

○ 청소·방역체제 정비

- 지진발생시 건물붕괴 등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임시 쓰레기처리장 지정
-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약품·방역물자 비축

○ 지진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 관련 부서·기관별로 지진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 관련 부서 및 기관은 지진재난 관련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적용할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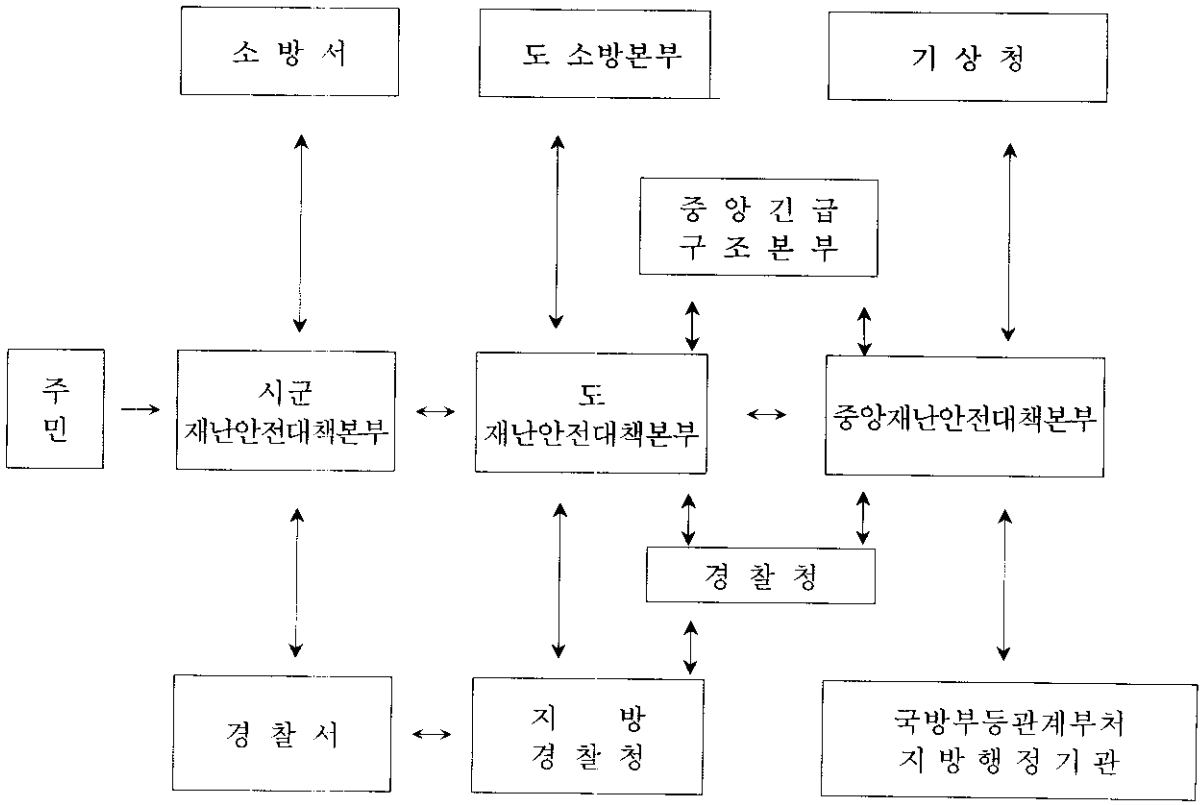
제2절 대비대책

1. 응급대응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 응급대응체계 확립

- 방재담당 공무원
  · 직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방재관계기관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
  · 응급·복구활동을 위한 방재관계기관 상호지원 강화
- 비상무선통신의 이용
- 위성통신네트워크, 행정무선, 행정전화외에 경찰, 군 등과 핫라인 설치
- TV영상전송시스템과 고정감시카메라, 영상전송시스템의 도입 등 다중적 정보통신시스템 확보

○ 비상연락체계



2. 재난예·경보 및 정보의 수집·연락

○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하여 재해 예·경보 발령사항, 재해 발생, 응급조치, 복구상황을

- TV자막 방송 등 방송사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 수집된 각종피해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신속 전파
- TV·라디오를 통한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

3.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대응대책

○ 응급대응체제 정비

- 직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 생활필수품·의약품 등의 조달, 대피시설 등의 상호이용 지원 체제 정비
- 구급·의료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한 시설은 정전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 재난예·경보 및 정보의 수집·연락

- 신속·정확한 재난정보의 수집·연락 체제정비
- 민간기업, 보도기관, 주민 등으로부터의 재난관련정보 등의 수집체제 정비
- 정보분석을 위한 인재육성과 전문가 의견 활용

○ 대피체계 및 대피장소의 정비

- 대피장소 및 대피로를 사전 지정, 평소부터 주민에게 홍보
- 재난발생시 대피유도에 관한 계획의 사전 작성·훈련
- 노약자, 장애인, 그 밖의 재난취약자 등의 대피유도체제 정비

- 공원, 학교,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구, 지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와 규모의 대피장소 지정
- 저수조, 우물, 간이화장실, 통신기기 등 대피장소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정비
- 대피장소 또는 대피생활에 필요한 물자 비축

제3절 대응대책

1.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 지진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지진발생 초기단계
  - 상황실 설치운영(정보의 수집·전파)
  - 상황실·현장지휘소 근무요원 파견요청(유관기관)
  - 종사명령 및 물자 등의 확보
  - 교통통제 및 현장 경비요원 지원
  - 화재진압지원
  - 피해상황 신고 접수
  - 보도지원
  - 자원봉사자 접수관리
  - 유관기관간 협조 또는 지원요청(시·군 구조·구난본부, 경찰서, 군부대 등)
  - 피해지역주민 대피권고·지시 및 유도
  - 음료수·식료·생활필수품 등의 보급
  - 긴급도로 개설 등
- 지진발생 수습단계
  - 피해사항 자체조사
  - 방역실시
  - 인력 및 장비지원
  - 쓰레기 처리 및 장비지원
  - 응급복구용 자재 및 물자지원
  - 교육 및 금융지원계획 수립추진
  - 시설물 응급복구대책
  - 국민생활필수시설(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 토목공공시설복구(도로·교량, 공항시설, 사방·산사태 방지시설, 철도시설·사회공공시설 등)

○ 주민에 대한 재난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KBS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파체계 확립
  - 문자(스크롤) 방송 또는 생방송체제로 긴급뉴스 방송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 피해수습체계 구축

- 피해상황보고
  - 주요피해상황 : 읍면동→시·군대책본부→도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 피해상황집계 : 읍면동→시군구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도재난안전대책본부
  - 대규모피해(즉보) : 주민→읍면동→시·군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 유관기관간의 상호협력

-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자체물자 및 장비만으로는 수습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인접 시도 및 시군구간 상호협력 지원체제 구축
-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공공단체·군·경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민간단체등과도 비상연락망 정비 등 상호 지원·협력체제 구축
- 재해규모별·분야별로 지원협력 매뉴얼을 작성 활용
- 방재훈련 등을 통한 개인별 역할분담 확립
- 광역협력체제 구축
  - 비축물자나 장비 등의 규격을 통일하여 유사시 신속한 지원체제 유지
  - 지진방재전문가의 양성

○ 종사명령 및 물자 등의 확보

- 인력의 종사 및 시설·물자 등의 사용
  - 인력 : 의사, 약사, 간호사, 토목·건축기술자, 기능공 등 특수분야 기술자 중에서 동원대상자 지정
  - 물자 : 응급조치에 필요한 토지, 가옥, 물자 등의 수용·사용·보관 명령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지정

○ 소방·위험물대책수립

- 지진소방대책 수립 추진
  - 대규모 화재에 대비, 인근 소방서와 상호응원 협력체제 구축 운영
- 위험물·유독물 취급시설 등의 응급대책 수립
  - 위험물·유독물 취급시설 등의 관리자로 하여금 방재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2. 재난발생 직후의 대책

○ 2차 재난 방지대책 수립

- 건축물, 구조물의 붕괴대책
- 폭발 및 화재방지대책

○ 시설물 응급복구대책

- 건축·토목기술자 등 전문 인력은 지방노동사무소에 요청
- 기타 인력지원 군부대에 요청

○ 긴급수송계획

- 긴급수송로의 지정 운영
  - 물자 등의 생산 및 보관지에서 피해예상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를 긴급 수송도로로 지정
- 긴급 운송루트의 확보(철도, 도로, 항로)
  - 육공으로 다중교통 네트워크 수단 확보
  - 대형헬기 등 수송장비 지정
- 긴급도로 개설